

정책연구보고 P148 | 2011. 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정 대 희 연구원
조 규 담 초빙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농업부문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동향 분석, 양허안 분석
	정 대 희	연 구 원	자료 수집 및 분석
	조 규 담	초빙연구위원	TPP 논의동향 분석

머 리 말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2010년 11월에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TPP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협정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캐나다, 필리핀, 대만 등도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TPP는 APEC이나 ASEAN+3(또는 6)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할 경제통합체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미국 등 기존의 TPP 회원국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TPP 회원국이 될 경우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후발 가입국은 이미 체결된 TPP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연구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이 이미 체결한 4개국 간의 TPP 내용 분석하고,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의 협상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TPP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의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 시장개방 범위 또는 부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가 TPP 관련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1.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존의 TPP 회원국 이외에 일본,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TPP 회원국이 될 경우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될 경우 후발 가입국은 이미 체결된 TPP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뉴질랜드는 TPP 가입 협상에서 10년 이내에 모든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받아들였음. 특히 농산물은 비농산물에 비해 양허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임. 농산물(HS 1류부터 24류까지, 단, 3류 제외)은 TPP 협정에서 즉시철폐로 양허한 것의 비중이 36.8%로 기존 무관세 품목과 즉시철폐 품목을 합하면 농산물의 99.2%가 TPP 발효와 동시에 완전히 개방됨. 뉴질랜드는 농산물 가운데 8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음.
- 칠레는 TPP 가입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설정하였음. 농산물은 비농산물에 비해 양허 수준이 낮게 설정되었음. 칠레의 장기 관세철폐 품목 비중은 비농산물보다 농산물이 높고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34개는 모두 농산물임. 농산물의 관세 즉시철폐 대상은 803개로 전체 농산물의 75.9%이며,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없음. 관세철폐를 10년 이상 장

기로 설정한 품목은 낙농품, 설탕, 밀, 식용유 등임.

- 싱가포르의 HS 분류에 따른 전체 상품은 1만 702개이며, 이 가운데 6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관세가 부과되는 6개 품목은 모두 농산물로 맥주를 비롯한 주류이며 TPP 협정에서 관세의 즉시철폐로 양허됨.
- 브루나이는 전체 상품 1만 702개 가운데 기존 무관세 품목이 7,289개로 전체의 68.1%에 달함.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 가운데 TPP 협상에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없음. 농산물은 1,158개 품목 가운데 기존 무관세 품목이 1,058개로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음. 관세의 장기철폐로 볼 수 있는 10년철폐 품목은 없음. 양허제외 84개 품목 가운데 농산물이 80개를 차지하고 있음. 양허제외 품목은 주류(HS 22류) 47품목, 담배(HS 24류) 25품목, 기타조제식료품(HS 21류) 8품목 등임. 기타조제식료품에 속하는 품목들도 알코올성 음료 조제와 관련된 것임.
- TPP의 기본적인 목표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개방의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페루,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의 TPP 가입 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음.
- 초기 가입국인 P4는 농산물이 시장개방에 있어서 민감분야로 작용하지 않을 만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이었으나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5개국의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은 P4 국가보다 높은 상황임. 특히 협정 참여를 검토 중인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및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 가운데 미국, 페루, 칠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는 이미 FTA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따라서 FTA 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것에 따른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추가적인 부담은 실제 FTA 체결 국가와의 시장개방 수준과 TPP 가입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개방 수준을 비교·분석해야 판단이 가능함.
-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곡물류의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된다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TPP 회원국은 물론 기존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TPP 회원국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존재함.
- 곡물류 가운데 감자(식용)와 대두(식용)를 제외한 다른 주요 곡물의 시장개방 수준은 한·미 FTA가 가장 높음. 감자와 대두의 시장개방 수준은 한·ASEAN FTA가 한·미 FTA보다 높음. 따라서 미국에 대한 감자와 대두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칠레와 페루에 대한 곡물류의 시장개방 부담은 옥수수, 감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채유용 및 박용 대두에 대한 시장개방 부담은 칠레에 대해서만 나타날 수 있음(미국과 ASEAN에 대해서는 기존 FTA에서 이미 개방 수준을 높게 설정).
- 미국에 대하여는 냉장 닭고기, 쇠고기, 천연꿀, 분유, 치즈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돼지고기는 한·미 FTA에서 관세철폐 기간이 10년 이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없을 수 있음.
- 한·ASEAN FTA에서 우리나라는 축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낮기 때문에 TPP 가입 시 ASEAN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쇠고기,

돼지고기, 천연꿀, 유당을 제외한 주요 낙농품 등은 한·ASEAN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 또는 관세감축 20% 정도로 양허된 것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남아있음.

- 칠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할 축산물은 냉동 닭고기, 쇠고기, 요구르트를 제외한 주요 낙농품 등임. 냉장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한·칠레 FTA에서 이미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없음.
- 과일은 한·미 FTA 협상에서 10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큰 품목에 속함. 사과, 배, 포도, 감귤 및 오렌지, 참다래 등 주요 과일은 대부분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함.
-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등 ASEAN 국가로부터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한·ASEAN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로 하였고, 사과, 배 등 중요한 온대성 과일은 관세철폐 대신 관세의 부분감축(20%, 50% 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ASEAN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됨.
- 칠레와의 FTA에서 사과와 배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열대성 과일은 DDA 협상 이후에 시장개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추가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됨.
- 한·미 FTA 협상에서 채소 및 과채류의 시장개방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TPP 가입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채소 및 과채류, 인삼 등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존재함.

- 배추, 오이,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는 ASEAN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한·ASEAN FTA에서 관세양허 제외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칠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도 ASEAN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이, 호박, 배추, 당근 등 일부 채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채소 및 과채류가 한·칠레 FTA 협상에서 DDA 이후 논의 품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후발 5개국의 TPP 가입 협상과 일본의 TPP 가입 여부를 들 수 있음. 후발 5개국의 가입 협상에서 시장개방의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도 영향을 받게 됨.
- 우리나라는 TPP 참여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후발 5개국의 TPP 가입 협상 결과와 일본의 결정을 지켜본 후 농업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비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긍정적 영향 등을 분석한 후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ABSTRACT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s: Results of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Accession

Trans-Pacific Partnership(TPP) is a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mong New Zealand, Singapore, Chile and Brunei launched in June 2005 to promot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Asia Pacific region. It aims to eliminate tariffs by 2015. With the joining of new member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ooming, it is time for Korea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joining the TPP proactively.

As new members are required to accommodate the existing agreements of the current TPP, it is inevitable for Korea to open up its market at a higher level than the current FTAs it has signed. New Zealand agreed to scrap tariffs on every product (including produce) within ten years while Chile set the tariff elimination period at up to 12 years. Singapore maintained tariffs on 6 product categories. But they are mostly agricultural produce and it lifted the tariffs right after joining the TPP. Brunei agreed to get rid of tariffs on all agricultural products except for tobacco and alcoholic liquors.

Against this backdrop, as the main principle of TPP is zero tariffs for all products, it is highly unlikely that Korea, if it intends to join the treaty, is allowed waivers in market opening except for especial cases. It remains to be seen that what level of agreements that five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under TPP membership negotiations (i.e., the US, Peru, Australia, Malaysia and Vietnam) achieve. Based on the negotiation result, Korea may be able to secure some level of flexibility.

Even though rice among grains is excluded from concession, it is expected that pressures on additional opening for major other grains such as soybeans, potatoes, and corns is building. In particular, the pressures on opening the Korean market to US soybeans and potatoes become large. To Chile and Peru, Korea is expected to widen its market for their corns and potatoes.

In the case of livestock products, there are increasing pressures to open the Korean market up to US refrigerated chicken, beef, honey, milk powder, cheese and other dairy products. But when it comes to pork, Korea faces less pressure for additional opening as the Korea-US FTA allowed 10 years of grace period for tariff eradication. On the contrary, as the Korea-ASEAN FTA mandated a relatively low level of market opening for livestock products, Korea would face pressure for more market opening for ASEAN if it joins the TPP. With Chile, it may broaden its market access to refrigerated chicken, beef and dairy food except for yogurt.

As the Korea-US FTA agreed to eliminate the tariffs on many fruits only after a grace period of over ten years, fruit is the trickiest area of market opening to the US with the TPP. Currently, banana, pineapple and tangerine coming from ASEAN countries are excluded from tariff elimination and the tariffs on apples and pears will be partially lifted (20% and 50% respectively) based on the Korea ASEAN FTA. In the case of the FTA with Chile, apples and pears are excluded from tariff elimination and discussions on market opening for tangerines, bananas, oranges, pineapples and other tropical fruits are scheduled to be launched after DDA negotiations. All in all, there will be increasing pressure on market opening with Korea's joining of TPP.

In conclusion, the benefits of Korea's joining the of TPP will not be significant. Korea already has concluded FTAs with Chile, Singapore, the US, Peru, Malaysia, Vietnam and Brunei, the members of TPP negotiations and FTA negotiations are under way with New Zealand and Australia. But losses from additional market opening for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visible. Therefore, it need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joining the TPP after carefully monitoring TPP negotiations of 5 new countries and decisions of Japan and the assessing negative/positive impacts of additional market opening of agricultural/non-agricultural products.

Researchers: Choi Sei-Kyun(Ph.D), Dae-Hee Chung and Gyu-Dam Choi(Ph.D)

Research period: 2011. 3. - 2011. 7.

E-mail address: skchoi@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TPP 협상 동향

1. TPP 추진 배경 7
2. TPP 협상 동향 10
3. 주요 협상 참여국 동향 13

제3장. 협정내용 분석

1. 협정의 구성 21
2. 농산물 시장개방 분석 25
3. 원산지 규정 42
4. 기타 농산물 관련 TPP 협정의 주요 내용 49

제4장. TPP 가입과 농산물 시장개방

1. 한·미 FTA 농산물 시장개방 60
2. 한·칠레 FTA 66
3. 한·페루 FTA 69
4. 한·ASEAN FTA 72

제5장. TPP 가입의 영향과 시사점

1.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 전망 79
2. 시사점 90

참고문헌 93

부표. 칠레의 농산물 중 즉시철폐 예외 품목 95

표 차 례

제2장

표 2-1. TPP 협상 일정	11
------------------------	----

제3장

표 3-1. TPP 협정의 구성	24
표 3-2. 뉴질랜드의 양허안의 농산물/비농산물 비교	26
표 3-3. 뉴질랜드의 TPP 협정 농산물 관세양허 내용	27
표 3-4. 뉴질랜드의 농산물 중 즉시철폐 예외 품목	28
표 3-5. 칠레의 TPP 관세철폐 양허 내용	30
표 3-6. 칠레의 농산물 양허안	30
표 3-7. 칠레의 농산물 중 10년 이상 장기철폐 품목	32
표 3-8. 싱가포르의 농산물 양허안	35
표 3-9. 싱가포르의 농산물 중 즉시철폐 품목	36
표 3-10. 브루나이의 TPP 관세양허 내용	37
표 3-11. 브루나이의 농산물 양허안	37
표 3-12. 브루나이의 관세 즉시철폐 이외 농산물의 이행계획서	39
표 3-13. TPP 협상의 완전생산물 이외 농산물의 원산지 기준	46
표 3-14. 칠레의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 품목 및 발동기준물량	54

제4장

표 4-1. 한·미 FTA에서 한국의 대미 농산물 관세양허	61
표 4-2. 우리나라의 한·칠레 FTA 농산물 양허 내용	67
표 4-3. WTO 세이프가드와 한·칠레 FTA 세이프가드 간의 비교	69

표 4-4. 한·페루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	69
표 4-5. 한·페루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관세양허	71
표 4-6. 한·ASEAN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	73
표 4-7. 한·ASEAN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관세양허	73
표 4-8. 한·ASEAN FTA에서 한국의 주요 농산물 시장개방 내용	77
표 4-9. 한·ASEAN FTA에서 한국의 TRQ 제공 내역	77

제5장

표 5-1. TPP 참여 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곡물)	82
표 5-2. TPP 참여 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축산물)	83
표 5-3. TPP 참여 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과일)	86
표 5-4. TPP 참여 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채소/특작)	88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TPP 협상 참여국가 현황	10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또는 환태평양(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 TPP는 창설 초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로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였음. 미

국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외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음.

-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음. 최초 협정 체결 4개국과 미국을 비롯한 후발 참여 5개국 간의 협상은 2009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연기되어 2010년 중에 네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음(3월, 6월, 10월, 11월). 미국과 뉴질랜드 정상은 2011년 11월 APEC 회의 이전에 TPP 협상의 큰 틀에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2011. 7. 미국에서의 정상회의에서 밝힌 내용).
 - 미국은 2009년 11월과 1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됨.
-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2010년 11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를 공식화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를 밝힘.
 -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 합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제3의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일본 농수산업계의 반발 등).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간 나오토 총리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하고 2011년 6월까지 TPP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함.
 - 그러나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 등으로 일본의 TPP 참여 여부 결정은 예정보다 늦춰지고 있으며 TPP 참여 의지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은 미국이 추진해왔던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심의 환태평양경제통합, 중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아시아 경제통합(ASEAN+3),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ASEAN+3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포함시키는 ASEAN+6 중심의 범아시아경제통합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들 중 지난 10여 년간 진전을 이룬 것은 ASEAN+3 중심의 경제협력이며, 미국이 주도해 온 APEC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미국의 TPP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에 중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데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998년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경제협력의 수준과 폭을 확대해 왔으며, 한·중·일 3국은 모두 ASEAN과 FTA를 체결한 바 있음. 특히 중국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세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해 왔음.
- 미국이 TPP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경우 TPP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통상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때 가입을 검토할 의향을 나타낸 바 있음. 향후 일본, 미국 등이 TPP에 가입하고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이 TPP 회원국이 될 경우 우리나라도 가입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후발 가입국의 경우 이미 체결된 TPP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미 체결된 TPP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후발 참여국들의 협상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이 이미 체결한 4개국 간의 TPP 내용 분석,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의 협상동향,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일본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TPP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TPP 참여국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이지만 TPP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비해 한층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TPP 가입 여부는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이 모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 국한하여 가입에 따른 추가적 시장개방 범위 또는 부담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1. TPP 추진 경과

- TPP 추진 배경
- 기존 4개 가입국의 협상 경과
- 협상 중인 5개국의 협상 참여 배경
- 협상 중인 국가의 협상 경과
- 협상 참여 추진 중인 국가의 동향

2. 기존 TPP 농산물 분야 양허 분석

- TPP 포괄 범위
 - 상품양허
 - 서비스
 - 지적재산권
 - 정부조달
 - 경쟁정책
 - 기술장벽(비관세장벽)
 - 원산지
 - 위생검역(SPS)
 - 무역구제조치

- 4개 회원국의 농산물 양허내용 분석
 - 관세양허
 - 비관세장벽
 - 원산지
 - 위생 및 검역(SPS)
 - 상품양허 이외 분야(정부조달, 투자, 서비스 등 농산물 관련)

3. 우리나라의 기존 FTA와 TPP 비교 분석

- 농산물 관세양허 분야
 - 한·미 FTA 등과 TPP 비교
 -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 분야 분석

4. TPP 추진 방향

- TPP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 TPP 확대 전망

3.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기존 TPP 회원국들의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가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TPP 협정문 분석과 문헌조사가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음. 주요 문헌으로는 TPP 협정문 관련 문헌, 언론보도 자료 등이 있음.
- 그밖에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우리나라의 농산물 분야 기존 FTA 협정문 분석이 병행되었음. 우리나라의 기존 FTA 협정문 분석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개방 의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

제 2 장

TPP 협상 동향

1. TPP 추진 배경

-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P4(Pacific Four)로도 칭함.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사례에 속함.
- 지역무역협정은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되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 또는 낮은 단계로 경제통합 단계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점차 발전됨.
 - RTA 가운데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인 FTA가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 TPP 협정은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동식물검역(SPS), 무역상 기술 장벽(TBTs),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정부의 경쟁정책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이 포괄하고 있는 주요 부문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음.

- 칠레와 뉴질랜드가 양자 간 FTA 협상을 논의하고,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경제동반자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CEP)을 체결(2000년)하면서 3국 간의 ‘태평양 3개국 경제동반자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 CEP)’ 결성의 움직임이 보였음. 2002년 APEC 정상회담에서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음. 브루나이는 2차 협상부터 옵서버로 참여함.
 - P3 CEP는 2002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개시되었고 브루나이는 2005년 4월에 협상에 참여하였음.
-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간 협정에 대한 서명은 2005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2006년 5월 28일에 발효되었음.
 - 2005년 6월 한국의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P4(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타결이 선언되었음. 협정이 발효된 것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에는 2006년 5월 28일부터, 브루나이는 7월 12일부터 그리고 칠레는 11월 8일부터 등으로 차이가 있음.
-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을 비롯한 후발 5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자극받은 일본, 필리핀, 대만도 TPP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2008년 TPP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며 호주, 페루, 베트남도 같이 참여하기를 요청했음. 미국은 무역·생산·투자 면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심화에 대한 전략적 우려 때문에 새로운 동아시아 통상전략을 통해 아시아 지역 핵심국가들과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최원기 2011).

- TPP는 농업을 포함해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FTA보다 더 높은 차원의 협정이며,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 칠레 등 기존의 FTA 협정보다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TPP는 협정 초기에는 참여국들(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관계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음. 그러나 미국이 새로운 통상 및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고 이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관심이 높아진 바 있음. 미국은 TPP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한국, 일본 등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미국은 일본의 TPP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국 간의 통상 문제 가운데 하나인 쇠고기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일본을 압박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알려짐(연합뉴스 2011. 1. 6.).
-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TPP 참여 검토 의사를 표명(2010.10)한 후,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2010.11)에서 TPP 참여를 협상 의지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보수집 및 참가국과 협의 개시를 발표한 바 있음. 일본의 TPP 관련 정부 기관들(내각부,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등)은 TPP 협상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등 TPP 협상에 대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TPP 참가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바는 없으나, 2010년 11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TPP 협상 참가 검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일본 아사히 신문, 2010.11.13).
- 중국은 ASEAN+3를 아태지역 경제통합 또는 지역통합의 기본축이라는 입장이며, 미국과 일본의 TPP 참여는 중국의 이러한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위해서 TPP,

ASEAN+3, ASEAN+6 등에 기반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친 것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역내 역할이 확립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며 중국과 미국의 역내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

그림 2-1. TPP 협상 참여국가 현황



자료: 동아일보

2. TPP 협상 동향

- P4는 2010년 3월부터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의 참여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2010년 10월 3차협상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였음.
- TPP 협상 참가국들은 2011년 11월 개최될 APEC 정상회담(하와이) 시 타결을 목표로 24개 분야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2002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교섭 시작. 이후 브루나이 참가
 - 2006년: P4 협정 발효.

- 2008년: 미국, TPP 협상 참가의사 표명
- 2010년: 기존 P4 협정 회원국 이외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등 4개국 TPP 협상 개시(3월). 말레이시아 협상 참가(10월)

○ 2011년까지 협상 일정은 <표 2-1>과 같음.

표 2-1. TPP 협상 일정

협상	협상 시기	개 최 국	비고	
제1차	2010년	3월	호 주	
제2차		6월	미 국	
제3차		10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참가 표명
제4차		12월	뉴질랜드	
제5차	2011년	2월	칠 레	
제6차		3월	싱가포르	
제7차		6월	베 트 남	
제8차		9월	미 국	
제9차		10월	페 루	

자료: 임송수 외, 2011.

-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들이 제시한 목표는 2011년까지 협상의 큰 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2011년 협상은 2010년보다 한 차례 늘어난 다섯 차례로 계획되어 있음.
- 제5차 협상은 2011년 2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음. 9개국에서 모두 675명의 대표단이 참여함.
 - 협상 참여국들은 2011년 1월 말에 시장개방과 관련된 제안서(offer)를 교환하였으며, 제5차 협상에서 이를 기초로 상품협상을 진행함.
 - 제6차 회의를 대비해 3월까지 요구사항(requests) 목록을 교환하기로 합의함.
- 제5차 협상에서 상품의 시장접근, 무역 구제, 기술적 무역장벽(TBT), 환경,

법적·제도적 이슈,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함. 새로운 주제로 투자, 전자상거래(e-commerce), 원산지 규정,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이 밖에도 칠레의 노동법과 실제, SPS 조치, 유기농 분야의 TBT 이슈 등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됨.
- 특히 투자에 관한 논의 최초 P4 협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음.

○ 협상 참여국들은 서비스와 투자, 정부조달 분야에 관한 제안서를 제6차 회의 전에 제출하기로 합의함.

- 상가포르에서 열린 제6차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리적 표시, 관세, 섬유, 휴대전화 국제로밍 요금,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또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논의에서 진척이 있었음.

○ 제7차 협상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되었음. 제7차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명성, 통신, 관세, 환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특히 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논의의 진척이 있었음.

-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베트남의 TPP 참여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히 섬유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제7차 회의에서는 기업들과 NGO 단체들의 발표도 있었음. 포드는 자동차 분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주장하였음. 구글은 인터넷을 ‘21세기의 무역로’로 규정하고 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구글과 미국영화협회는 지적재산권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였음. 한편, NGO 단체들은 분쟁기구, 지적재산권, 제약분야 등 다양한 이슈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제8차 협상은 미국 시카고에서 9월 6일에서 14일까지 열릴 예정임.

- 페루에서 개최될 제9차 협상에서 시장개방과 관련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2011년 11월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예외 범위 등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TPP 협상의 기본 목표가 예외 없는 시장개방이지만 최초 4개국 협상에서도 일부 국가는 시장개방 예외 품목을 설정한 바 있음.
 - 브루나이의 경우 전체 품목 가운데 84개 품목을 시장개방 예외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80개 품목이 농산물임.
- 일본은 쌀의 시장개방 예외가 전제되지 않고는 TPP 가입 협상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임. 미국은 낙농품과 설탕 등 민감품목의 시장개방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장개방 예외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미국, 호주, 칠레 등은 일본의 쌀 시장개방의 예외 취급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주요 협상 참여국 동향

2.1. 미국

- 2010년 3월에 TPP 협상을 개시한 미국은 2011년 다섯 차례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11월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TPP는 조기에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경제적으로 큰 실익이 없는 FTA가 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들 중 호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시

장규모와 미국과의 교역액이 미미한 수준임.

- 미국은 TPP 협상국 중 4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며, TPP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로부터 기대되는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이 TPP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TPP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예상되는 전략적, 경제적 이익 때문임. 미국은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들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고 경제력이 큰 한국과 일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경우 경제적으로는 물론 외교, 안보 등 전략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TPP 규율을 한국이나 일본에 적용시킬 경우 한국과 일본이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농수산 분야 등의 개방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음. 또한 미국의 TPP 추진은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태지역 경제협력 및 지역화에 대한 양국의 경쟁이 가열될 수 있음.
- 미국 행정부가 2009년 12월 정부의 TPP 협상참가 의사를 의회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TPP 참여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잠재적 토대를 창출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증대의 수단을 확보하는 것임.
- 따라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협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시장 기회를 보장받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무역협정이 많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음.
- 미국은 호주, 중남미, 중동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정은 한국과 싱가포르밖에 없음.

- 따라서 미국은 TPP 협정을 통해 아시태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미국의 지역무역협정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기를 원하고 있음. 미국은 이를 ‘높은 수준의 21세기 협정(high-standard, 21st century agreement)’로 칭함.
- 미국의 TPP 회원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미미한 수준임. TPP 후발 5개국 및 일본까지 회원국에 포함될 경우 미국의 TPP 회원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지만 일본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TPP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경제외적 유대를 강화하여 ASEAN 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
- 미국은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TPP의 위상과 미국의 TPP에서의 영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의 참여에 적극적인 반면 캐나다의 TPP 참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은 기본적인 부분이 결정될 때까지 캐나다를 TPP 협상에서 제외하고, 이후에 완성된 협정을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Clark 2010). 캐나다의 협상참가 요구에 미국이 미온하게 대응하는 것은 캐나다의 농산물 관리 정책 등 TPP 협상에서 민감한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임.
 -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NAFTA나 WTO를 통해 얻지 못한 서비스 부문(건강관리, 교육, 영화 등)에 대한 접근, 엄격한 지적재산권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 의회가 낙농제품 시장의 개방을 꺼리고 있는 것도 캐나다의 협상 참여를 후순위로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임.
- 미국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도 TPP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 특히 쇠고기와 낙농제품 관련 단체의 반대가 강함. 쇠고기와 낙농제품은 미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임.

- 미국은 TPP의 틀 안에서 양자 간 시장접근 협정을 원하는 반면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모든 당사자가 협상하는 접근방식을 선호함.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형태(hub and spoke agreement)의 양자 간 빠른 협상을 원하고 있음.
- 미국은 노동, 환경, 특허보호 등의 이슈를 TPP 협상의제로 다루기를 희망하고 있음. 미국은 WTO TRIPS 협정 이상(TRIP-plus)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는 WTO 협정 수준에 부응하는(TRIPS-aligned) 접근을 선호하고 있음.
- WTO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 규율을 지지하는 미국이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례는 한·미 FTA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① 특허권 소유자와 공조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 제공
 - ② 저자, 연기자, 프로듀서에게 작품 복제 권한의 승인 여부 허용(음악이나 파일 공유에 관한 법적 수용성 제한)
 - ③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압수(압수 대상 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 불필요)
 - ④ 민간단체나 권리권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당국이 침해에 대해 대응 및 관련 자산 몰수
 - ⑤ 저작권이 보호된 영화의 캠코더 촬영에 대한 형사 처벌
- 지리적 표시제(GI)에 관한 뉴질랜드의 입장은 각국의 영토에서 이전부터 존재하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first in time, first in right 접근 방식).
 - 이는 낙농제품 수출국으로서 뉴질랜드가 다양한 치즈 품목 상표를 보호하려는 EU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임. 이러한 제안은 GI를 TPP에 포함시키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에 GI 규정을 적용하려는 EU의 시도에 제동을 거는 것임.

- 일본의 TPP 협상 참여의 전제로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 시장접근 개선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Inside US Trade 2011d).
 -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병 이후 일본은 20개월 이내 연령의 소와 소고기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처럼 30개월의 연령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것이 미국의 요구사항임.
 - TPP에 참여하는 대가로 일본은 농업부문의 상당한 개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촌 표심을 얻어 2009년 선거에서 승리한 일본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Japan)의 처지에서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임.
- 미국은 다자간 FTA인 TPP에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쇠고기 등 농업분야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연합뉴스 2011.1.6). 이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을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과 뉴질랜드는 2011년 7월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2011년 11월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이전에 TPP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도록 상호 노력할 것에 합의한 바 있음. 미국의 TPP 가입은 원래 목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

2.2. 일본

- 일본의 TPP 참여 검토는 최근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과 적극적인 FTA 전략으로 외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음. 일본 총리는 2010년 신년사에서 ‘제3의 개국’을 언급하면서 TPP 참여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농민단체를 비롯한 국내의 반발이 심하여 가입 협상 참여 여부의 결정은 2011년 6월로 연기하였음.

- 일본 총리는 2010년 10월 임시국회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역 (FTAAP) 구축을 목표로 TPP 협상 참여를 검토한다고 밝힘.
 - TPP 참여를 계기로 ‘제3의 개국’과 시장개방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부담을 안고 있는 ‘농업부문의 재생’을 추구한다는 것임.
- 일본은 2010년 11월 관련 국가와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식품·농림업 개선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완전 자유화에 대비하는 방안을 2011년 6월까지 검토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농업의 재생 측면에서는 대담한 농업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발전, 곧 농업의 잠재력과 강한 농업을 실현한다면 무역자유화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임.
- 일본은 TPP 참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지역협력 또는 통합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동아시아경제통합 등 여타 FTA 방안이 아직 구상 단계인 반면, TPP 협상은 기존 P4를 비롯하여 9개국이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TPP 협상에 일찍 참여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고 향후 여타 FTA 출범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의 TPP 추진 전략에는 협상과정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과 이를 통해 중국 중심으로 논의되기 쉬운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논의에 대응하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논의는 ASEAN+3, ASEAN+6 등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이 제안한 ASEAN+3 FTA 논의가 중국 중심으로 진행될 것에 대응하여 일본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된 ASEAN+6 FTA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을 보이고 있음.

- 정치권, 이해당사자, 민간부문의 TPP 득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TPP 참여와 농업개혁,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형편임.
 -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일본 정부는 전국 9개 도시에서 이른바 ‘개국포럼’을 개최해 TPP 관련 토론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경제산업성은 농업관계자를 위한 펀드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TPP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농림수산성과 상반된 입장을 나타냄.
 -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지원책은 펀드 조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생산자 육성, 농지통합을 위한 합작회사 활용, 비료와 농기계 비용의 절감,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등을 활용한 수출촉진 등임.

- 그러나 TPP 참여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장개방과 농업 발전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농업구조 개선이 추진되어 대규모 영농이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자동으로 국제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과 비농업 등 부문 간의 자원배분을 둘러싼 경쟁(농업은 국내의 공업과 성장을 경쟁하는 것이지만 외국 농업과 하는 것이 아님), 부문 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요인 등이 경쟁력 제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일본의 TPP 찬성론자들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TPP 참여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주요 FTA 대상국이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EU와 미국은 일본에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외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의 FTA 정책에 자극을 받는 상황임.
 - TPP는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비해 불리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 여건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일본의 TPP 참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문인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피해 보상 방안,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정지작업이 없는 한 일본의 TPP 참여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일본과 미국 간의 실무협약에서 미국은 농업 분야를 포함한 관세의 원칙적 전면 철폐,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가 협정 참가의 전제조건이라는 원칙을 밝혔음.
 -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TPP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 미국은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선 21세기형 자유무역 규정을 미·일 공동으로 추구하자고 제안한 점 등으로 볼 때 일본의 민감품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장개방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실질적으로 TPP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초기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 농민단체를 비롯한 국내적 반발이 심할 뿐만 아니라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시장 개방 및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고 2011년 3월에 발생한 대지진 복구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임.
- 그러나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TPP가 아태지역 자유무역 추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기능하는 경우,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참여 압력은 한층 강화될 것임. 후발 참여국은 이미 타결된 TPP 시장개방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제 3 장

협정내용 분석

1. 협정의 구성

- FTA 협정문 체계는 대체로 전문(Preamble), 본문(장, 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서한(letter) 등으로 구성됨.
 - 부속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관세양허 계획 등과 같이 내용이 방대한 것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FTA 협상에서 통상장관 등 정부 당국자 간의 서한도 협정문의 해석을 위한 내용이나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TPP 협정은 전문, 20개 장(chapter),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FTA 회원국 간의 관세 감축 또는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개방 계획이 다루어짐.
 - 시장개방에 있어서 취약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농산물은 관세의 장기철폐, 관세양허 제외, 계절관세 등 관세철폐의 일반적 원칙이라 할 수 있는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3항: 합리적인 이행기간은 불가피한 경우

- 를 제외하고 10년 이내이어야 한다'의 예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나 TPP 협정에서는 시장개방의 예외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이 특징임.
- 농산물에 대한 상품양허 분야는 관세쿼터(TRQ), 농산물긴급구제조치 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양허방식 또는 시장개방 보완조치 내용이 포함됨. TPP 협정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됨.
- 원산지기준은 FTA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 수출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임. 기본적으로 회원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완전생산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게 됨.
 - TPP 협정(4장)에서도 도교협약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원산지기준이 채택되었음. 완전생산물 기준이나 완전생산물 이외 상품에 대한 품목별 기준은 이 보고서의 원산지 분야에서 별도로 다루게 됨.
 - 통관절차의 투명성, 간편성 등은 국제무역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1950년대 설립된 초창기의 FTA에서도 관세양허와 통관절차가 포함되었고, 통관절차는 사실상 모든 FTA가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요 내용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의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회원국 간 세관당국이 협력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음.
 - TPP 협정에서는 5장에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무역구제조치란 특정품목의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무역구제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SG),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으로 구성됨.
 - TPP에서는 양자 간 SG(6장)와 농산물 세이프가드(SASM)가 도입되었음.
 - 동식물위생(SPS) 조치는 동식물검역 조치로 불리기도 하며, 인간과 동식물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에 대한 국제규범을 의미함.¹ FTA 협상에서 동식물에 대한 위생 검역은 다자무역체제의 규범(WTO SPS)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TPP 협정도 WTO SPS 협정을 준용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짐.

- 무역에 있어 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이들 기술장벽 요소들에 대한 각국의 제도가 자국의 산업적 여건 및 정책목적에 의해 규정되어 왔고, 이러한 차이는 국제무역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됨.
 - 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 중복적인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자국제품과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임.
 - FTA에서 회원국은 기술규제를 포함한 제도 측면의 요인이 회원국가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음. TPP에서 기술장벽 문제는 협정 8장에서 다루고 있음.

- 지적재산권(혹은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됨. 저작권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포함됨.
 - WTO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이 체결되어 있음.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자국의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을 규정하고 이를 전파시켜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TPP 협정에서는 10장에 지적재산권 분야를 규정하고 있음.

¹ 특정 수입요건 부과의 근거가 되는 수출국의 동식물 위생상황은 WTO SPS 협정, CODEX, OIE, IPPC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수입국이 결정하게 됨. CODEX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는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또는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IPPC는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을 의미함.

- 정부조달이란 정부기관(중앙, 지방, 공공기관 포함)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민간부문으로부터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함.
 - 정부조달은 그 특성상 정부라는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이 그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개방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음. 그러나 정부조달이 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점 인식되면서 조달시장도 개방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제는 다자무역협상 또는 지역무역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협상의제로 등장하였음.
 - 정부조달협정은 WTO에서도 일부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복수국 협정으로 존재하며, 일정 금액 이상(‘하한선’으로 부름)의 정부기관의 구입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되며, WTO 회원국별로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음. TPP 협정에서는 11장에서 정부조달을 다루고 있음.

표 3-1. TPP 협정의 구성

장(Chapter)	내용	장(Chapter)	내용
전문		12	서비스 무역
1	설립조항	13	일시적 입국
2	정의	14	투명성
3	상품 무역	15	분쟁 해결
4	원산지 원칙	16	전략적 제휴
5	통관 절차	17	행정 및 제도
6	무역구제	18	일반 조항
7	SPS 조치	19	일반 예외
8	TBT 조치	20	최종 조항
9	경쟁정책	부속서 I	양허표
10	지적재산권	부속서 II	특별 원산지 규정
11	정부조달	부속서 III & IV	서비스 양허표 1부 & 2부

자료: MFAT(<http://www.mfat.govt.nz/>)

2. 농산물 시장개방 분석

2.1.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TPP 가입 협상에서 10년 이내에 모든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받아들였음. 특히 농산물은 비농산물에 비해 양허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임.
 - 뉴질랜드는 비농산물보다 농산물에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라는 특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뉴질랜드의 관세철폐 유형은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등 네 가지로 매우 단순함. 이 가운데 농산물은 10년철폐 유형이 없이 5년 이내의 단기철폐만 설정됨.
- 뉴질랜드는 전체 상품 7,237개 가운데 기존의 무관세 품목이 4,276개(전체의 59.1%)이며,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가운데 1,693개가 즉시 철폐에 포함됨(23.4%).
- 3년철폐에 속하는 품목은 114개로 전체 상품 가운데 1.6%이며, 5년철폐 품목이 495개로 전체의 6.8%임. 따라서 즉시철폐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의 관세 단기철폐에 속하는 품목은 기존 무관세 품목을 포함하여 6,578품목으로 전체의 90.9% 수준임.
- 관세의 장기철폐로 볼 수 있는 10년철폐 품목은 659개로 전체의 9.1%임. 농산물은 장기철폐 품목이 없음.
- 농산물(HS 1류부터 24류까지. 단, 3류 제외)은 기존 무관세 품목이 전체 농

산물 가운데 62.4%로 전체 상품의 기존 무관세 품목 비중 59.1%에 비해 높음. TPP 협정에서 농산물의 즉시철폐 비중은 36.8%로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매우 높게 설정됨.

- 이러한 뉴질랜드의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TPP를 통해 협정 상대국의 농산물 시장개방과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존 무관세 품목과 즉시철폐 품목을 합하면 농산물의 99.2%가 TPP 발효와 동시에 완전히 개방됨.
- 뉴질랜드는 TPP 협상에서 농산물 가운데 8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을 뿐 나머지 품목은 기존의 무관세 품목을 포함하여 즉시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를 취했음.

표 3-2. 뉴질랜드의 양허안의 농산물/비농산물 비교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기존무관세	합계
전체 상품	1,693	114	495	659	4,276	7,237
	23.4%	1.6%	6.8%	9.1%	59.1%	100.0%
농산물	365	-	8	-	619	992
	36.8%	0.0%	0.8%	0.0%	62.4%	100.0%

자료: WTO, 뉴질랜드 양허안(TPP)

- 뉴질랜드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2.3%로 낮은 수준임. HS 4단위로 구분할 때 무관세를 나타내는 품목류는 산동물(HS 1류), 기타동물성 생산품(5류), 곡물(10류), 식물성엑스(13류), 기타식물성 생산품(14류) 등임.
- 뉴질랜드의 농산물 관세율로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는 품목류는 곡물조제품 및 빵류(19류)와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으로 평균 관세율이 각각 6.3%와 5.1%임.
- 나머지 품목은 미소관세로 볼 수 있는 5% 이내의 관세를 가지고 있음.

표 3-3. 뉴질랜드의 TPP 협정 농산물 관세양허 내용

HS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기존 무관세	계	평균 관세율
01	-	-	-	-	23	23	0%
02	28	-	-	-	36	64	2.5%
04	8	-	-	-	26	34	1.3%
05	-	-	-	-	17	17	0%
06	3	-	-	-	12	15	1.0%
07	15	-	-	-	57	72	1.2%
08	7	-	-	-	54	61	0.6%
09	21	-	-	-	27	48	2.3%
10	-	-	-	-	16	16	0%
11	23	-	-	-	11	34	3.9%
12	2	-	-	-	44	46	0.3%
13	-	-	-	-	12	12	0%
14	-	-	-	-	8	8	0%
15	13	-	-	-	46	59	1.3%
16	26	-	-	-	44	70	2.3%
17	7	-	-	-	12	19	2.0%
18	5	-	-	-	6	11	3.0%
19	26	-	-	-	2	28	6.3%
20	109	-	-	-	19	128	5.1%
21	25	-	8	-	19	52	4.3%
22	30	-	-	-	93	123	1.5%
23	8	-	-	-	21	29	1.8%
24	7	-	-	-	16	23	1.5%
합계	363	-	8	-	621	992	2.3%
비중	36.6%	0.0%	0.8%	0.0%	62.6%	100.0%	

자료: WTO, 뉴질랜드 양허안(TPP)

- 관세의 즉시철폐 예외에 속하는 8개 품목은 기타의 조제식료품(21류)에 속하는 품목으로 알코올이 포함된 얼음혼합물(HS 2106류)에 속하는 품목임.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7%이며, 2006년부터 관세감축이 시작되어 2010년에 철폐됨.

표 3-4. 뉴질랜드의 농산물 중 즉시철폐 예외 품목

세번	품목명	관세율 (%)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1069091	알코올이 포함된 열음 혼합물 (식용)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2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3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4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5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7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8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9		7	5	4.5	4	3	0	0	0	0	0	0

자료: WTO, 뉴질랜드 양허안(TPP)

2.2. 칠레

- 칠레는 TPP 가입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설정하였음. 이는 뉴질랜드에 비해 2년이 길게 설정된 것이지만 현행관세 유지 등 시장개방의 예외 품목은 없음. 농산물은 비농산물에 비해 양허 수준이 낮게 설정되었음.
 - 칠레의 장기 관세철폐 품목 비중은 비농산물보다 농산물이 높고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34개는 모두 농산물임.
- 칠레의 관세철폐 유형은 즉시철폐, 3년철폐, 6년철폐, 10년철폐, 12년철폐 등 다섯 가지로 단순하지만 뉴질랜드에 비해서는 12년철폐 한 가지가 많고 5년철폐 대신 6년철폐로 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됨.
- 칠레는 전체 상품 7,902개 가운데 기존의 무관세 품목은 35개에 불과하고 농산물은 기존 무관세 품목이 없음. 무관세 품목 이외에 5,855개 품목이 즉

시철폐 대상으로 전체의 74.1%임.

- 농산물 가운데 즉시철폐 대상은 803개로 전체 농산물의 75.9%임.

- 전체 상품 가운데 3년철폐에 속하는 품목은 898개로 전체 상품의 11.4%를 차지함. 6년철폐와 10년철폐 상품이 각각 862개와 218개를 차지하고 있음.
 - 농산물의 3년철폐 대상은 103개로 전체 농산물의 9.7%임. 6년철폐와 10년철폐 대상 농산물은 각각 70개와 48개임. 농산물의 5년 이내 단기철폐 비중은 비농산물보다 낮고 10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칠레의 관세는 6% 중심세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이 6%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육류, 곡물류, 동식물성 유지, 당류 및 설탕과자 등 일부 품목이 6%보다 높은 관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평균 관세율은 7.4% 수준임.
 - 6%보다 높은 관세율을 보이는 품목의 관세율은 육류 8.5%, 곡물류 7.3%, 동식물성 유지 17%, 당류 및 설탕과자 25% 등으로 동식물성 유지와 설탕과자 등 가공품의 관세가 평균 관세율보다 3~4배 높게 나타남.
- 농산물 가운데 관세철폐 기간이 6년인 것은 주로 낙농품, 채소, 곡물, 곡분 및 전분, 채소·과일 조제품 등에 분포되어 있음.
- 칠레는 산동물(HS 1류), 기타동물성생산물(5류), 산수목 및 화훼류(6류), 커피·차(9류), 기타식물성생산물(14류), 코코아 및 초콜릿(18류), 담배(24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표 3-5. 칠레의 TPP 관세철폐 양허 내용

	즉시철폐	3년철폐	6년철폐	10년철폐	12년철폐	기존 무관세	계
전체	5,855	898	862	218	34	35	7,902
	74.1%	11.4%	10.9%	2.8%	0.4%	0.4%	100.0%
농산물	803	103	70	48	34	0	1,058
	75.9%	9.7%	6.6%	4.5%	3.2%	0.0%	100.0%

자료: WTO, 칠레 양허안(TPP)

표 3-6. 칠레의 농산물 양허안

HS	즉시철폐	3년철폐	6년철폐	10년철폐	12년철폐	계	관세율(%)
01	28	-	-	-	-	28	6.0
02	73	12	-	-	-	85	8.5
04	12	7	6	-	34	59	6.0
05	26	-	-	-	-	26	6.0
06	27	-	-	-	-	27	6.0
07	67	8	15	-	-	90	6.0
08	99	-	1	-	-	100	6.0
09	34	-	-	-	-	34	6.0
10	9	1	9	1	-	20	7.3
11	12	3	14	1	-	30	6.9
12	49	14	9	-	-	72	6.0
13	12	2	-	-	-	14	6.0
14	10	-	-	-	-	10	6.0
15	31	4	1	29	-	65	17.0
16	73	10	-	-	-	83	6.0
17	12	-	-	17	-	29	25.0
18	20	-	-	-	-	20	6.0
19	12	13	3	-	-	28	6.0
20	89	-	4	-	-	93	6.0
21	29	5	1	-	-	35	6.0
22	46	5	2	-	-	53	6.0
23	19	19	5	-	-	43	6.0
24	14	-	-	-	-	14	6.0
합계	803	103	70	48	34	1,058	7.4
비중	75.9%	9.7%	6.6%	4.5%	3.2%	100.0%	

자료: WTO, 칠레 양허안(TPP)

- 농산물 가운데 관세가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은 10년철폐 48개, 12년철폐 34개 등 모두 82개로 전체 농산물의 7.8%에 해당됨. HS 4단 위로 구분할 때 장기철폐에 속하는 품목류는 곡물(HS 10류), 낙농품(4류), 곡분(11류), 동식물성유지(15류), 당류 및 설탕과자(17류) 등임.
- 10년철폐 품목은 HS 10류의 곡물 가운데에서는 밀과 메슬린이 유일하고, 11류의 곡분 가운데에서는 밀가루가 유일함. 나머지 46개의 10년철폐 품목은 동식물성유지와 당류 및 설탕과자에 속하는 것임.
- 관세철폐 기간이 12년으로 설정된 34개 품목은 모두 HS 4류의 낙농품으로 밀크, 크림, 유장, 버터, 치즈 등임.
- 칠레가 TPP 협상에서 농산물 가운데 민감품목으로 설정한 것은 낙농품, 설탕, 밀, 식용유 등으로 분석됨.
- 낙농품 가운데 유아용 조제품, 카세린, 락토즈, 단백질 농축물, 요구르트, 파마산, 블루치즈는 이행과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지만 대부분의 낙농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12년에 걸쳐 진행됨.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유장과 변성유장, 버터, 데어리 스프레드, 치즈(모짜렐라치즈, 체다치즈, 고다치즈, 에담치즈) 등의 관세는 2017년에 철폐됨.
- 12년철폐 유형으로 양허된 품목은 세이프가드가 적용됨. 세이프가드는 발효 후 6년간 적용될 수 없고,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도 적용될 수 없음.

표 3-7. 칠레의 농산물 중 10년 이상 장기철폐 품목

세번	품목명	관세율 (%)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0019000	밀과 메슬린(기타)	31.50	31.50	31.50	28.90	26.30	23.70	21.00	15.80	10.50	5.30	0.00	0.00	0.00
110100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31.50	31.50	31.50	28.90	26.30	23.70	21.00	15.80	10.50	5.30	0.00	0.00	0.00
15071000	대두유와 그 분획물 (조유 및 기타)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7901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7909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81000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89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91000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99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000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11000	팜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110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12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11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19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2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2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2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1100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15131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2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1100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1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9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9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2100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 (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2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5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901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909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세번	품목명	관세율 (%)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179090	마가린 및 15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기타)	6.00	5.40	4.80	4.20	3.60	3.00	2.40	1.80	1.20	0.60	0.00	0.00	0.00	
17011100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120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10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1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2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9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22000	기타의 당류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3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4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5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1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2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9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901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909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31000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39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4021000	밀크와 크림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1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3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4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5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6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7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1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세번	품목명	관세율 (%)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402291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3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4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5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6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7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1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1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9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9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39000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 크림·요구르트·케피어 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41000	유장과 변성유장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1000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2000	(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9000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103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10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10	치즈와 커드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20	(모짜렐라치즈, 체다치즈, 고다치즈, 에담치즈)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3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자료: WTO, 칠레 양허안(TPP)

2.3.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HS 분류에 따른 전체 상품은 1만 702개이며, 이 가운데 6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관세가 부과되는 6개 품목은 모두 농산물임.
- 기존 무관세 품목이 아닌 6개 품목은 HS 22류에 속하는 맥주를 비롯한 주류이며, 현재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음. 이들 품목의 관세는 TPP 협정에서 즉시철폐로 양허됨.

표 3-8. 싱가포르의 농산물 양허안

HS2	즉시철폐	기존무관세	합계	비중
01	-	44	44	3.8%
02	-	71	71	6.1%
04	-	54	54	4.7%
05	-	33	33	2.8%
06	-	23	23	2.0%
07	-	91	91	7.9%
08	-	58	58	5.0%
09	-	47	47	4.1%
10	-	35	35	3.0%
11	-	39	39	3.4%
12	-	65	65	5.6%
13	-	19	19	1.6%
14	-	11	11	0.9%
15	-	151	151	13.0%
16	-	52	52	4.5%
17	-	26	26	2.2%
18	-	17	17	1.5%
19	-	57	57	4.9%
20	-	89	89	7.7%
21	-	53	53	4.6%
22	6(종량세)	54	60	5.2%
23	-	34	34	2.9%
24	-	29	29	2.5%
합계	6(종량세)	1,152	1,158	100.0%
비중	0.5%	99.5%	100.0%	

자료: WTO, 싱가포르 양허안(TPP)

표 3-9. 싱가포르의 농산물 중 즉시철폐 품목

세번	품목명	관세율
22030010	맥주	\$1.70/ltr
22030090		\$0.80/ltr
22089010	SAMSU	\$8.00/ltr
22089020		\$8.00/ltr
22089030		\$8.00/ltr
22089040		\$8.00/ltr

자료: WTO, 싱가포르 양허안(TPP)

2.4. 브루나이

- 브루나이는 전체 상품 1만 702개 가운데 기존 무관세 품목이 7,289개로 전체의 68.1%에 달할 정도로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국가임.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 가운데 TPP 협상에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없음.
 - 그러나 TPP 협상에서 뉴질랜드와 칠레의 즉시철폐 비중은 기존 무관세 품목을 포함할 경우 각각 82.5%와 74.5%인 것에 비해 시장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싱가포르는 TPP 발효와 동시에 회원국에 대하여 모든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됨.
- 관세양허는 5년철폐², 7년철폐³, 10년철폐, 양허제외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즉시철폐 품목이 전무하다는 것은 다른 협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인 현상임.
- 기존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가운데 TPP 협상에서 양허한 내용을 보면, 7년철폐가 1,656품목(전체의 15.5%)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년철폐(1,098품목, 10.3%), 5년철폐(575품목, 5.4%), 양허제외(84품목, 0.8%) 순임.

² 농산물의 경우 4년간의 관세감축 유예 후 5년차에 무관세가 되는 것을 5년철폐에 분류하였음.

³ 농산물의 경우 6년간의 관세감축 유예 후 7년차에 무관세가 되는 것을 7년철폐에 분류하였음.

표 3-10. 브루나이의 TPP 관세양허 내용

	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10년철폐	기존 무관세	양허제외	계
전체	-	575	1,656	1,098	7,289	84	10,702
	0.0%	5.4%	15.5%	10.3%	68.1%	0.8%	100.0%
농산물	-	4	16	-	1,058	80	1,158
	0.0%	0.3%	1.4%	0.0%	91.4%	6.9%	10.8%

자료: WTO, 브루나이 양허안(TPP)

- 농산물은 1,158개 품목 가운데 기존 무관세 품목이 1,058개로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음. 농산물 시장은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이 관세 없이 수입될 정도의 시장개방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기존 무관세 품목 이외의 농산물 가운데 4년간 관세감축이 유예되고 5년차에 무관세가 되는(5년철폐) 것은 4개 품목, 6년간 관세감축이 유예되고 7년차에 무관세가 되는(7년철폐) 것은 16개 품목임. 관세의 장기 철폐로 볼 수 있는 10년철폐 품목은 없음.
- 7년철폐에 속하는 16개 품목은 모두 HS 9류의 차, 커피, 향신료임. 5년철폐 4개 품목은 HS 21류의 기타조제식료품에 속하는 상품임.

표 3-11. 브루나이의 농산물 양허안

	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10년철폐	기존 무관세	양허제외	합계	비중	평균 관세율
01	-	-	-	-	44	-	44	3.8%	-
02	-	-	-	-	71	-	71	6.1%	-
04	-	-	-	-	54	-	54	4.7%	-
05	-	-	-	-	33	-	33	2.8%	-
06	-	-	-	-	23	-	23	2.0%	-
07	-	-	-	-	91	-	91	7.9%	-
08	-	-	-	-	58	-	58	5.0%	-
09	-	-	16	-	31	-	47	4.1%	-

	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10년철폐	기존 무관세	양허제외	합계	비중	평균 관세율
10	-	-	-	-	35	-	35	3.0%	-
11	-	-	-	-	39	-	39	3.4%	-
12	-	-	-	-	65	-	65	5.6%	-
13	-	-	-	-	19	-	19	1.6%	-
14	-	-	-	-	11	-	11	0.9%	-
15	-	-	-	-	151	-	151	13.0%	-
16	-	-	-	-	52	-	52	4.5%	-
17	-	-	-	-	26	-	26	2.2%	-
18	-	-	-	-	17	-	17	1.5%	-
19	-	-	-	-	57	-	57	4.9%	-
20	-	-	-	-	89	-	89	7.7%	-
21	-	4	-	-	41	8	53	4.6%	0.4
22	-	-	-	-	13	47	60	5.2%	-
23	-	-	-	-	34	-	34	2.9%	-
24	-	-	-	-	4	25	29	2.5%	-
합계	-	4	16	-	1,058	80	1,158	100.0%	0.02
비중	0.0%	0.3%	1.4%	0.0%	91.4%	6.9%	100.0%		

자료: WTO, 브루나이 양허안(TPP)

- 양허제외 84개 품목 가운데 농산물이 80개를 차지하고 있음. 양허제외 품목은 주류(HS 22류) 47품목, 담배(HS 24류) 25품목, 기타조제식료품(HS 21류) 8품목 등임. 기타조제식료품에 속하는 품목들도 알코올성 음료 조제와 관련된 것임.
 - 따라서 브루나이가 농산물 가운데 80개 품목을 시장개방 예외로 취급하였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과 국민 건강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TPP 협정의 예외 없는 시장개방이라는 일반적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양허제외나 일정기간 관세감축 유예 후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모두 100개)은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음.

표 3-12. 브루나이의 관세 즉시철폐 이외 농산물의 이행계획서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9011110	커피	11¢/kg	11¢/kg				0	0	0	0		
09011190		11¢/kg	11¢/kg				0	0	0	0		
09011210		11¢/kg	11¢/kg				0	0	0	0		
09011290		11¢/kg	11¢/kg				0	0	0	0		
09012110		22¢/kg	22¢/kg				0	0	0	0		
09012120		22¢/kg	22¢/kg				0	0	0	0		
09012210		22¢/kg	22¢/kg				0	0	0	0		
09012220		22¢/kg	22¢/kg				0	0	0	0		
09021010	차류 (녹차, 홍차, 마태차 등)	22¢/kg	22¢/kg				0	0	0	0		
09021090		22¢/kg	22¢/kg				0	0	0	0		
09022010		22¢/kg	22¢/kg				0	0	0	0		
09022090		22¢/kg	22¢/kg				0	0	0	0		
09023010		22¢/kg	22¢/kg				0	0	0	0		
09023090		22¢/kg	22¢/kg				0	0	0	0		
09024010		22¢/kg	22¢/kg				0	0	0	0		
09024090		22¢/kg	22¢/kg				0	0	0	0		
21011110	커피, 차 조제품	5	5			0	0	0	0	0	0	0
21011190		5	5			0	0	0	0	0	0	0
21011200		5	5			0	0	0	0	0	0	0
21012000		5	5			0	0	0	0	0	0	0
21069061	조제 식료품 (알코올 음료용)	\$250.00/dal ²⁾	\$250.00/dal									
21069062		\$250.00/dal	\$250.00/dal									
21069063		\$250.00/dal	\$250.00/dal									
21069064		\$250.00/dal	\$250.00/dal									
21069065		\$250.00/dal	\$250.00/dal									
21069066		\$250.00/dal	\$250.00/dal									
21069067		\$250.00/dal	\$250.00/dal									
21069069		\$250.00/dal	\$250.00/dal									
22030010	맥주	\$30.00/dal	\$30.00/dal									
22030090		\$30.00/dal	\$30.00/dal									
22041000	포도주 및 포도즙	\$120.00/dal	\$120.00/dal									
22042111		\$55.00/dal	\$55.00/dal									
22042112		\$90.00/dal	\$90.00/dal									
22042121		\$55.00/dal	\$55.00/dal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2042122	포도주 및 포도즙	\$90.00/dal	\$90.00/dal									
22042911		\$55.00/dal	\$55.00/dal									
22042912		\$90.00/dal	\$90.00/dal									
22042921		\$55.00/dal	\$55.00/dal									
22042922		\$90.00/dal	\$90.00/dal									
22043010		\$55.00/dal	\$55.00/dal									
22043020		\$90.00/dal	\$90.00/dal									
22051010	베르무트 ¹⁾ 과 이와 비슷한 포도주	\$55.00/dal	\$55.00/dal									
22051020		\$90.00/dal	\$90.00/dal									
22059010		\$55.00/dal	\$55.00/dal									
22059020		\$90.00/dal	\$90.00/dal									
22060010	기타 발효주	\$30.00/dal	\$30.00/dal									
22060020		\$90.00/dal	\$90.00/dal									
22060030		\$90.00/dal	\$90.00/dal									
22060040		\$30.00/dal	\$30.00/dal									
22060050		\$30.00/dal	\$30.00/dal									
22060090		\$30.00/dal	\$30.00/dal									
2207100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250.p.p.dal	\$250.p.p.dal									
22082010	브랜디, 위스키, 럼, 태피야, 진, 제네바, 보드카 등	\$250.p.p.dal	\$250.p.p.dal									
22082020		\$250.p.p.dal	\$250.p.p.dal									
22082030		\$250.p.p.dal	\$250.p.p.dal									
22082040		\$250.p.p.dal	\$250.p.p.dal									
22083010		\$250.p.p.dal	\$250.p.p.dal									
22083020		\$250.p.p.dal	\$250.p.p.dal									
22084010		\$250.p.p.dal	\$250.p.p.dal									
22084020		\$250.p.p.dal	\$250.p.p.dal									
22085010		\$250.p.p.dal	\$250.p.p.dal									
22085020		\$250.p.p.dal	\$250.p.p.dal									
22086010		\$250.p.p.dal	\$250.p.p.dal									
22086020		\$250.p.p.dal	\$250.p.p.dal									
22087010		\$250.00/dal	\$250.00/dal									
22087020		\$250.00/dal	\$250.00/dal									
22089010		\$90.00/dal	\$90.00/dal									
22089020		\$120.p.p.dal	\$120.p.p.dal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2089030	브랜디, 위스키, 럼, 태피아, 진, 제네바, 보드카 등	\$90.00/dal	\$90.00/dal										
22089040		\$120.p.p.dal	\$120.p.p.dal										
22089050		\$90.00/dal	\$90.00/dal										
22089060		\$120.p.p.dal	\$120.p.p.dal										
22089070		\$250.00/dal	\$250.00/dal										
22089080		\$250.00/dal	\$250.00/dal										
22089090		\$120.p.p.dal	\$120.p.p.dal										
24011010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30.00/kg	\$30.00/kg										
24011020		\$30.00/kg	\$30.00/kg										
24011030		\$30.00/kg	\$30.00/kg										
24011090		\$30.00/kg	\$30.00/kg										
24012010		\$30.00/kg	\$30.00/kg										
24012020		\$30.00/kg	\$30.00/kg										
24012030		\$30.00/kg	\$30.00/kg										
24012040		\$30.00/kg	\$30.00/kg										
24012050		\$30.00/kg	\$30.00/kg										
24012090		\$30.00/kg	\$30.00/kg										
24013010		\$30.00/kg	\$30.00/kg										
24013090		\$30.00/kg	\$30.00/kg										
24021000		시가, 켈런	\$100.00/kg	\$100.00/kg									
24022010			\$60.00/kg	\$60.00/kg									
24022090			\$60.00/kg	\$60.00/kg									
24031011	기타제조 담배	\$60.00/kg	\$60.00/kg										
24031019		\$60.00/kg	\$60.00/kg										
24031021		\$35.00/kg	\$35.00/kg										
24031029		\$35.00/kg	\$35.00/kg										
24031090		\$35.00/kg	\$35.00/kg										
24039100		\$60.00/kg	\$60.00/kg										
24039940		\$60.00/kg	\$60.00/kg										
24039950		\$60.00/kg	\$60.00/kg										
24039960		\$60.00/kg	\$60.00/kg										
24039990		\$60.00/kg	\$60.00/kg										

주: 1) 베르무트(vermouth)는 백포도주에 향초 등을 가미한 술을 의미함.

2) dal은 decaliter로 10리터를 의미함.

자료: WTO, 브루나이 양허안(TPP)

3. 원산지 규정

-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협정체결 당사국 간의 거래에 있어서 특혜대우를 받을 대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이 중요함.
- WTO 설립협정 부속서 1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은 비특혜원산지 규정이며, 통일원산지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과는 관련이 거의 없음. 따라서 지역무역협정 당사국들은 특혜대우를 받을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협정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됨.
- 상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함. 원산지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라 할 수 있음.
- 모든 FTA에서는 특혜관세의 적용과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주로 사용됨.
-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주로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이나 광산품 등 1차 산품이 이에 해당되며, 자국산 원재료만 사용하여 가공한 물품도 이에 해당됨.
- 실질적변형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을 가공·생산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가공생산품이 이에 해당됨.

- 실질적변형의 판정은 세번변경(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VC: Value Content)기준과 특정(주요)공정(SP: Specific Process)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기준들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함.

○ 원산지 판정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미소기준(De Minimis), 롤업(Roll-up) 혹은 흡수(Absorption) 원칙, 누적(Cumulation)조항 등이 있음.

- 누적조항은 생산자들이 최종제품의 특혜적 지위를 상실함 없이 특정 원산지로부터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최소허용조항과 함께 많이 이용됨. 누적조항은 크게 3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회원국 간에 수입된 부품사용이 허용되는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일정비율 이하의 제3국산 부품 사용을 인정하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그리고 FTA에 의해 창설된 전체특혜지역이 단일 영토로 간주되어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여하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조항 등임.

- 미소조항은 비원산지 재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임.

3.1.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은 아래와 같음.

a. 당해 국가의 토양 또는 해저에서 채취된 광물성 생산품

- b. 당해 국가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물
- c. 당해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 동물
- d. 당해 국가에서 산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 e. 당해 국가에서 수렵, 덫사냥, 어로, 영농, 채취, 양식을 통해 얻은 생산품
- f.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당해 국가의 영해에서 선박의 해양어업에 의해 획득한 생산품(갑각류 어류, 어류, 기타 해산물)
- g. f조항의 생산품을 가지고 당해 국가에 등록되고 국기를 게양한 공장선박(factory ship)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생산품
- h. 제조 및 가공작업에서 생긴 부산물과 폐기물, 그리고 중고품으로써 당해 국가에서 수집되고 원자재의 회수에만 적합한 것
- i.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당해 국가의 영해의 해저 토양에서 획득된 상품
- j. 당해 국가에서 재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중고품의 재생품
- k. 당해 국가에서 a에서 j항목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상품

3.2. 역내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

- TPP 협정문 부속서II에 열거된 품목들은 다음의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역내부가가치(RVC)를 계산함(협정문 4.3조). 역내부가가치는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기준충족 조건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음.

$$RVC = \{ \text{거래가치(FOB 가격)} - \text{비원산지 가치} \} / \text{거래가치}$$

3.3. 원산지 불인정 공정

- 다음과 같은 단순한 공정은 원산지 인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함.
 - a. 운송, 저장 과정의 품질 유지를 위한 공정

- b. 체질, 세척, 분류, 절단 등 단순 공정
- c. 포장의 변경, 조합
- d. 포장, 개장, 재포장
- e. 표시, 라벨 등의 부착
- f. 희석

3.4. 누적

- 협정 상대국의 부품을 사용한 경우도 회원국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양자누적을 도입하였음(4.5조).

3.5. 미소허용기준

- 10% 이하의 비원산지 부품을 사용하고 부속서 II에서 정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를 인정함(4.6조).

3.6. 완전생산물 이외 농산물의 원산지 규정

- 완전생산물이 아닌 경우 농산물은 세번변경 기준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며, 일부 품목은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병행하고 있음.
 - 역내부가가치 기준 45%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원산지가 인정됨(HS 14류, 19류, 21류, 23류, 24류 등)
- HS 21류(기타 채소/과실 조제품)의 경우 일부는 역내부가가치 45%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는 품목이 있고, 다른 일부 품목은 역내부가가치 45%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있음(아래 표 참조)

표 3-13. TPP 협상의 완전생산물 이외 농산물의 원산지 기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1부	01류	산 동물	
		01.01-01.06	어떤 류에서든 01.01-01.06으로 변경한 경우.
	02류	육·식용 설육	
		02.01-02.10	어떤 류에서든 02.01-02.10으로 변경한 경우.
	0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04.10		어떤 류에서든 04.01-04.10으로 변경한 경우.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5.01-05.11	어떤 류에서든 05.01-05.11으로 변경한 경우.	
식물성 생산품(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종자, 구근, 근경, 절화, 접지에서 자란 농업, 원예상품도 원산지로 인정함.)			
제2부	06류	산 수목, 기타 산 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06.01-06.04	어떤 류에서든 06.01-06.04로 변경한 경우.
	07류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7.01-07.14	어떤 류에서든 07.01-07.14로 변경한 경우.
	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08.14	어떤 류에서든 08.01-08.14로 변경한 경우.
	09류	커피, 차, 마태, 향신료	
		0901.11-0901.90	그룹 내의 다른 소호를 포함하여, 어떤 소호에서든 0901.11-0901.90으로 변경한 경우.
		0902.10-0910.90	그룹 내의 다른 소호를 포함하여, 어떤 소호에서든 0902.10-0902.40으로 변경한 경우.
		09.03	어떤 호에서든 09.03으로 변경한 경우.
	10류	곡물	
		10.01-10.08	어떤 류에서든 10.01-10.08로 변경한 경우.
	11류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11.01-11.02	어떤 류에서든 11.01-11.02로 변경한 경우.
1103.11-1105.20		그룹 내에서의 다른 소호를 포함하여, 어떤 소호에서든 1103.11-1105.20으로 변경한 경우.	
11.06-11.08		그룹 내에서의 다른 호를 포함하여, 어떤 호에서든 11.06-11.08로 변경한 경우.	
		11.09	어떤 류에서든 11.09로 변경한 경우.

제2부	12류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12.01-12.07	어떤 류에서든 12.01-12.07로 변경한 경우.
		12.08	어떤 호에서든 12.08로 변경한 경우.
		12.09-12.14	어떤 류에서든 12.09-12.14로 변경한 경우.
	13류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01-13.02	어떤 류에서든 13.01-13.02로 변경한 경우.
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14.01	어떤 류에서든 14.01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14.02-14.04	어떤 류에서든 14.02-14.04로 변경한 경우.	
제3부	동물성의 유지 및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류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5.01-15.16	어떤 류에서든 15.01-15.16으로 변경한 경우.
		15.17	어떤 호에서든 15.17로 변경한 경우.
		15.18	어떤 류에서든 15.18로 변경한 경우.
		15.20	어떤 호에서든 15.20으로 변경한 경우.
15.21-15.22	어떤 류에서든 15.21-15.22로 변경한 경우.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코올, 식초,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16.05	어떤 류에서든 16.01-16.05로 변경한 경우.
	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17.04	그룹 내에서의 다른 호를 포함하여, 어떤 호에서든 17.01-17.04로 변경한 경우.
	18류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18.01-18.02	어떤 류에서든 18.01-18.02으로 변경한 경우.
		18.03-18.06	그룹 내에서의 다른 호를 포함하여, 어떤 호에서든 18.03-18.06으로 변경한 경우.
	19류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19.01		어떤 호에서든 19.01로 변경한 경우.	
19.02		어떤 호에서든 19.02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19.03-19.05	그룹 내에서의 다른 호를 포함하여, 어떤 호에서든 19.03-19.05로 변경한 경우.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코올, 식초,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4부	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원료가 자국에서 생산되거나 양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함)	
		20.01-20.04	어떤 류에서든 20.01-20.04으로 변경한 경우.
		20.05	어떤 호에서든 20.05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20.06	어떤 류에서든 20.06으로 변경한 경우.
		20.07	어떤 호에서든 20.07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2008.11-2009.91	어떤 호에서든 2008.11-2009.91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2008.92-2008.99	어떤 소호에서든 2008.92-2008.99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함.
		2009.11-2009.80	어떤 호에서든 2009.11-2009.80으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2009.90	어떤 소호에서든 2009.90으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21류	각종 조제식료품	
21.01-21.05		그룹 내에서의 다른 호를 포함하여, 어떤 호에서든 21.01-21.05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2106.10-2106.90		그룹 내에서의 다른 소호를 포함하여, 어떤 소호에서든 2106.10-2106.90으로 변경한 경우.	
22류	음료, 알코올, 식초		
	22.01	어떤 류에서든 22.01로 변경한 경우.	
	22.02-22.09	그룹 내에서의 다른 호를 포함하여, 어떤 호에서든 22.02-22.09로 변경한 경우	
23류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23.01-23.08	어떤 류에서든 22.01-22.08로 변경한 경우.	
	23.09	어떤 호에서든 22.09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24류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24.03	그룹 내에서의 다른 호를 포함하여, 어떤 호에서든 24.01-24.03으로 변경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4. 기타 농산물 관련 TPP 협정의 주요 내용

4.1. 농산물의 범위

- 농산물의 정의와 범위는 WTO 농업협정문 제2조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여 다른 FTA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FTA 협정에서는 대부분 WTO의 상품분류를 따르고 있음.
 -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수산물(3류)을 제외한 HS 1류부터 24류, HS 290543(만니톨), 290544(소르비톨), 3301(정유), 3501에서 3505까지(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및 그루우), 380910(전분질), 382360(소르비톨), 4101부터 4103까지(원피와 가죽), 4301(생모피), 5001부터 5003까지(생사와 견웨이스트), 5101부터 5103(양모와 동물의 털), 5201부터 5203까지(원면, 면웨이스트), 5301(천연아마), 5302(천연대마) 등이 포함됨.

4.2. 동식물위생(SPS) 조치

- TPP 협정에서 동식물위생 조치는 WTO SPS 협정에 준함.
- 동식물위생 조치를 위한 위원회를 협정 발효 후 1년 안에 설립해야 하며 1년에 최소한 1차례 개최되며,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의 규칙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함(7.4조 2항).
- 위원회는 각 국가를 대표하는 동식물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술 그룹을 구성하고 동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이슈들을 논의함.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협정에 대한 기능을 함.
 - ① 작업계획(work plans)의 설정, 감독, 재검토
 - ② 이행안(Implementing Arrangements)의 발의, 개발, 적용, 재검토 및 수정
- 모든 국가들은 이행안에 대하여 3개월 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사람, 동물, 식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위생 문제가 발생한 국가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13일 내에 해당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함.

4.3.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TPP 협정국 가운데 칠레만 와인과 증류주에 관하여 지리적 표시를 설정하였으며, 지리적 표시는 WTO TRIPS 협정 제22조에 따라 보호됨.
 - 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 칠레의 지리적 표시는 다음과 같음.
 - 와인 : Valle de Aconcagua, Alhue, Valle del Bio Bio, Buin, Balle del Cachapoal, Valle de Casablanca, Cauquences, Chillan, Chimbarongo, Valle del Choapa, Coelemu, Valle de Colchagua, Valle de Copiapo, Valle de Curico, Region de Aconcagua, Region de Atacama, Region de Coquimbo, Valle del Claro, Region del Sur, Region del Valle Central, Valle del Elqui, Valle del Huasco, Lllapel, Isla de Maipo, Valle del Itata, Valle de Leyda, Valle del Limari, Linares, Valle del Loncomilla, Valle del Lontue, Lolol, Valle del Maipo, Maria Pinto, Valle del Marga-Marga, Valle del Maule, Marchigue, Valle del Malleco, Melipilla, Molina, Monte Patria, Mulchen,

- Nancagua, Ovalle, Paiguano, Pajarete, Palmilla, Panquehue, Parral, Penciahue, Peralillo, Peumo, Pirque, Portezuelo, Puente Alto, Punitaqui, Quillon, Rancagua, Valle del Rapel, Rauco, Rengo, Requinoa, Rio Hurtado, Romeral, Sagrada Familia, Valle de San Antonio, San Juan, Salamanca, San Clemente, San Fernando, San Javier, San Rafael, Santa Cruz, Santiago, Talagante, Talca, Valle del Teno, Valle del Tutuven, Traiguén, Vicuña, Villa Alegre, Vino Asoleado, Yumbel 등 82개
- 증류주 : 피스코(Pisco)

4.4. 내국민대우

-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WTO 제3조⁴가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원용하고 있음. 따라서 역내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해 자국산과 같은 대우를 부여해야 함.
- TPP 협정에서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는 GATT 1944 제3조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음.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내국민 대우의 예외 등은 규정되지 않았음.

⁴ 1. 계약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과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는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의 부과대상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입 또는 국내상품에 내국세 또는 그밖의 내국과징금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는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5. 비관세조치

- 모든 국가들은 WTO 협정이나 TPP 협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비관세조치도 신설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됨. 칠레의 경우 중고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내용은 없음.

4.6. 수출세 및 수출보조

- 내수 소비용의 동일한 제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상 수출 상품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수출보조는 WTO 농업협정문 제1조 (e)항 및 개정안에 따르며, 특히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는 협정 발효 후 폐지해야 함.

4.7. 가격대 제도(Price Band System)

- 칠레는 법령 18.525의 제12조에 명시된 가격대 제도의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음.
 - 해당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목은 밀, 밀가루, 설탕(HS1001.9000(밀/기타), 1101.0000(밀가루), 1701.1100(사탕수수), 1701.1200(사탕무), 1701.9100(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 1701.9910(정제당/사탕수수의 것), 1701.9920(정제당/사탕무의 것), 1701.9990(정제당/기타의 것)) 등임.
 - 해당 품목의 수입가격이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 가격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임.

4.8.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는 GATT 1994 제19조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름. 반덤핑은 관

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중 GATT 1994 제6조의 반덤핑협정에 따르며, 상계관세는 WTO SCM 협정(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따름.

4.9. 특별 농산물 세이프가드(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SASM)

- TPP 협정에서 칠레의 경우 부속서 3.B.에 명시된 민감품목에 대해서 특별 세이프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해당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음. 특별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추가적인 관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나 해당연도의 기본세율을 초과할 수는 없음.

- 특별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해당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을 초과해서 수입이 될 경우 작동이 가능함.
 - 특별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반기(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각각의 기간에 들어온 물량을 합산하여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한 경우에 발동이 가능하며 발동기간은 해당 반기 동안임.

-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GATT 1994 제19조의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수 없음. 특별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키기 10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당사국에게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수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국에게 통보해야 함.
 - 상품무역위원회(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가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 운영을 재검토할 수 있음.

표 3-14. 칠레의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 품목 및 발동기준물량

세번	품목명	기준물량
0402.1000	밀크와 크림(분말, 입상,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미만인 것)	112.2톤
0402.2111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이상 6% 미만인 것)	112.2톤
0402.2112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지방분이 전 중량의 6% 이상 12% 미만인 것)	112.2톤
0402.2113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지방분이 전 중량의 12%인 것)	112.2톤
0402.2114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지방분이 전 중량의 12% 이상 18% 미만인 것)	112.2톤
0402.2115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지방분이 전 중량의 18%인 것)	112.2톤
0402.2116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지방분이 전 중량의 18% 이상 24% 미만인 것)	112.2톤
0402.2117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지방분이 전 중량의 24% 이상 26% 미만인 것)	112.2톤
0402.2118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지방분이 전 중량의 26% 이상인 것)	112.2톤
0402.2120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크림)	5.4톤
0402.2911	밀크와 크림(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이상 6% 미만인 것)	112.2톤
0402.2912	밀크와 크림(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6% 이상 12% 미만인 것)	112.2톤
0402.2913	밀크와 크림(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2%인 것)	112.2톤
0402.2914	밀크와 크림(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2% 이상 18% 미만인 것)	112.2톤
0402.2915	밀크와 크림(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8%인 것)	112.2톤
0402.2916	밀크와 크림(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8% 이상 24% 미만인 것)	112.2톤
0406.2917	밀크와 크림(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24% 이상 26% 미만인 것)	112.2톤
0402.2918	밀크와 크림(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26%인 것)	112.2톤
0402.2920	밀크와 크림(기타/크림)	112.2톤
0402.9110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우유 (액상, 응고))	27.6톤
0402.9120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크림)	27.6톤
0402.9910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무가당연유)	2.4톤
0402.9990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기타)	0.6톤

세번	품목명	기준물량
0403.9000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	156톤
0404.100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6톤
0405.1000	버터	240톤
0405.2000	테어리스프레드	240톤
0405.9000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기타	3.6톤
0406.1030	모짜렐라치즈	87톤
0406.1090	신선치즈/기타	87톤
0406.9010	고다 치즈	87톤
0406.9020	체다치즈	87톤
0406.9030	에담치즈	87톤
0406.9090	가공치즈/기타	87톤

주. 발동기준물량은 매년 복리로 8% 증가함.

4.10. 상품무역위원회(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 상품무역과 원산지규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TPP 협상 참여국들은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상품무역위원회는 문제사안의 판별, 시행된 구제조치에 대한 조언, 비관세 장벽 및 관세철폐를 위한 기능을 함.

4.11.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는 부속서 11.A에 열거되어 있으며 정부조달의 한도는 부속서 11.C에 명시되어 있음.

-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모두 정부조달에 농산물이 포함되나, 브루나이에 대해서는 부속서 11.A에서 기술하고 있지 않음.
 - 정부조달 한도는 상품 50,000 SDR⁵, 서비스 50,000 SDR, 건설 5,000,000 SDR임.
- 정부조달은 내국민 대우와 비차별의 원칙이 적용되나 관세나 각종 부과금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협상 참여국들은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야함.
 - 국방, 공중도덕, 질서, 안전, 인간, 동식물 건강이나 생명, 지적재산권, 장애인 관련 상품과 서비스, 비영리단체, 교도작업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정부조달협정의 예외에 속함.

4.12. 전략적 제휴(Strategic Partnership)

- 교역 및 투자의 증대,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경쟁력 향상, 상호 경제성장, 환태평양 지역의 교역 및 서비스 시장의 촉진 등의 목적으로 협상 참여국들은 혁신, 연구, 개발을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협력의 범위는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그리고 농림수산 분야임.
- 농림수산업협력의 주요 목적은 상호 간의 이해관계 도출 및 각국 정책준수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⁵ SDR은 special drawing rights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의미하며, 일종의 국제준비통화로 금이나 달러의 뒤를 잇는 제3의 통화로 간주되고 있음. SDR은 표준바스켓 방식으로 가치가 정해지는데 현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 통화시세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2010년 12월 30일 기준 1SDR은 1.54003달러임.

- 각국의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
- 각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사기업, 기타 연구기관 간의 과학지식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 활동,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합의 도출
- 상호보완적인 이해에 대한 협력 활동
- 제3국을 포함하는 농림수산업 분야의 국제무역자유화, 교역 및 상업적 협력 증진

제 4 장

TPP 가입과 농산물 시장개방

-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가운데 농산물 부문에 한정하여 전망하고자 함. 이러한 전망을 위해서는 이 보고서의 제3장에서 분석한 기존의 TPP 회원국들의 협상 내용 이외에 우리나라와 TPP 회원국 간의 기존의 지역무역협정 내용 등이 분석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한·칠레 FTA, 한·ASEAN FTA 등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및 TPP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들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을 타결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의 FTA로 이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부분은 TPP 가입에 따라 추가적인 개방 부담이 없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TPP 회원국 및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과 체결한 FTA의 농산물 시장개방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에 관해 논의하고자 함.

1. 한·미 FTA 농산물 시장개방

1.1. 주요 내용

- 농산물의 협상 대상 품목 수는 모두 1,531개이며, 시장개방은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최장 20년),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 관세철폐와 수입쿼터 병행, 관세철폐 예외 조건의 수입쿼터(TRQ) 제공, 계절관세, 용도별로 차별화된 개방 방식 등이 적용되었음.
- 관세철폐 기간이 가장 긴 것은 후지사과와 동양배로 20년이며, 그밖에 장기철폐 유형으로 10년, 12년, 15년, 16년, 17년, 18년 등이 있음. 관세의 단기철폐에 속하는 유형은 즉시, 2년, 3년, 5년 등이고, 중기철폐로 볼 수 있는 유형은 6년, 7년, 9년 등임.
- 그밖에 특정일을 기준으로 관세철폐를 정한 경우도 있고(돼지고기 대부분이 이에 포함됨), 일부 과일(오렌지, 포도)과 감자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계절관세가 적용됨. 동일 품목 내에서 용도별로 세번을 분리하여 시장개방 방식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도 있음(대두, 감자 등).
- 단기 관세철폐(여기서는 5년까지로 정의하고자 함) 품목은 모두 934개로 전체 품목의 61%이며, 이 가운데 즉시철폐 품목은 578개로 전체(1,531품목 기준)의 37.8%임.
 - 이러한 높은 단기철폐 비중은 대부분 가공식품 및 가공용 또는 사료곡물 등 원료 농산물의 단기철폐 비중이 높기 때문임. 중요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관세의 장기철폐 또는 관세철폐 예외가 많음.
- 농산물 관세양허를 품목류별(HS 2단위)로 볼 때 단기철폐 비중이 높은 품목은 산 동물(82%), 기타동물성 생산품(83%), 커피 및 차(86%), 채유용 종실 및 인삼(79%) 등임. 그밖에 산 수목, 꽃, 곡물 등의 단기철폐 비중도 각각

64%와 53%로 높은 편임. 양모 등 섬유제품의 원료, 향료 등의 단기철폐 비중은 90% 이상임.

- 관세의 단기철폐 비중이 낮은 품목류는 육류(단기철폐 비중 7%), 낙농품⁶(8%), 곡분 및 전분(36%), 채소(40%), 과일 및 견과류(40%)의 순임. 특히 육류(HS 2류)는 96개 품목 가운데 장기철폐 품목이 73개에 달함. HS 4류(주로 낙농품)는 51개 품목 가운데 47개 품목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에 속함.
- HS 10류(곡물)의 단기철폐 비중이 53%에 이르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하였던 쌀(HS 10단위 기준 16개 품목)은 관세철폐 및 쿼터 제공 등 시장개방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완전한 시장개방 예외조치 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그밖에 담배는 HS 10단위 기준 25개 품목이 모두 장기철폐로 분류되었고, 육류조제품(HS 16류)의 단기철폐 비중도 4%로 매우 낮은 수준임.

표 4-1. 한·미 FTA에서 한국의 대미 농산물 관세양허

	즉시	특정일 ⁷	현행유지 + TRQ	2년	3년	5년	6년	7년	9년	10년	12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년	예외	계
1류	29					12				7	1	1						50
2류	4	14			2	1		2		49	9	15						96
4류	4 (7)		12							24 (1)	3	8						51 (8)
5류	42				1	2				3	1	5						54
6류	47									27								74
7류	23 (1)		1			29		6		53	4	15 (1)						131 (2)
8류	23		1	3		5	1	5	1	21	6	11		1		(2)		78 (2)
9류	25					6						5						36
10류	13					4		2		2		5					6	32

⁶ 관세양허 기준으로 본 것으로 우리나라가 관세율쿼터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면 낙농품의 개방 수준이나 속도는 이러한 분류와 차이를 나타냄.

1.2. 주요 품목별 협상결과

1.2.1. 축산물

- 쇠고기는 우리나라의 초민감 품목 가운데 하나로 취급된 반면 미국은 농산물 가운데 최대 관심 품목으로 취급되었음. 쇠고기에 대한 최종 협상결과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행기간 중 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관세: ASG)를 적용하는 것임.
 - ASG 적용 대상 품목은 0201-10-0000부터 0202-30-0000까지 6개로 냉장 및 냉동 쇠고기 중요한 품목이 대부분 포함됨. 발동기준 물량은 1년차 27만 톤에서 매년 6,000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는 35만 4,000톤 까지 증가됨. ASG 발동 수준은 5년차까지는 실행세율만큼 인상, 6~10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75% 수준까지 인상, 11~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60%까지임.
-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 돼지고기는 냉장육 2개 세번(삼겹살, 기타(갈비, 목살))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세번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0년에 이루어진 재협상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상하였던 돼지고기 가운데 수입량이 많은 냉동 목살(돼지고기 냉동/기타, HSK 0203299000)의 관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철폐하되 현재 25%의 관세를 2012년에 16%에서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함.
 - ASG는 냉장육에 대하여만 10년간 적용할 수 있고 발동기준 물량은 1년차 8,250톤을 시작으로 매년 6%씩 증량하여 10년차에 1만 3,938톤으로 증가됨. ASG 발동 수준은 1~5년차에는 실행세율까지 인상하고 6~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7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인하하여 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50%까지 인상할 수 있음.

- 닭고기는 부위별, 냉동 또는 냉장 상태를 구분하여 관세철폐 기간에 차등을 두었음. 통닭(냉동 기타 제외) 및 닭가슴살과 닭날개 냉동육은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통닭(미절단, 기타, 냉동), 냉장 닭가슴, 닭다리, 닭날개 등 대부분의 닭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됨.
- 낙농품 가운데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하고 현행관세는 유지됨. 유장은 초기 관세를 20%에서 시작하여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TRQ는 3,0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사료용 유장은 즉시철폐)하게 됨. 분유와 연유의 TRQ는 5,0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됨. 치즈의 관세철폐 기간은 체다치즈는 10년, 기타치즈는 15년이며, TRQ는 7,0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무관세)됨.

1.2.2. 과일 및 파채류

- 오렌지에 대한 관세는 9월부터 2월까지의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의 초기 연도에 현재 50%인 관세를 30%로 인하하여 7년간 철폐해 나가는 형식을 취했음.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관세쿼터를 2,5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시켜 나가야 함. 감귤류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됨.
- 포도의 관세는 5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17년간 철폐하고 10월 16일부터 4월까지의 관세는 24%에서 시작하여 5년간 철폐됨.
- 사과와 감의 관세는 후지의 경우 20년에 걸쳐 철폐되고 기타 품목의 경우 10년에 걸쳐 철폐됨. ASG는 후지의 경우 23년, 기타는 10년간 적용됨. ASG 발동기준은 초기에 9,000톤에서 시작하여 1만 2,000톤으로 증량됨.
- 배는 동양배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은 20년으로 장기화하고 기타 배는 10년

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지만 ASG는 적용되지 않음.

- 복숭아와 단감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 키위의 관세철폐 기간은 15년, 체리의 관세는 이행 초기연도에 철폐됨. 견과류 가운데 미탈각 호도는 15년, 탈각 호도는 6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밤과 잣의 관세철폐 기간은 15년임. 그 밖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은행 10년, 토마토 7년, 초본류딸기 9년, 나무딸기 12년 등임.

1.2.3. 곡물

- 쌀은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16개 품목). 곡물 가운데 협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진 품목은 대두로 가공용은 개방 폭을 크게 하고 가정용은 개방 폭을 최소화하였음. 착유 및 대두박용, 장유용 대두의 관세철폐 유형은 즉시철폐인 반면 가정용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를 이행 초기연도에 2만 5,000톤 제공하고 이를 매년 3%씩 증량시켜 나가는 것임.
- 식용 감자는 코드를 분리하여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를 3,0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시키게 됨. 기타 가공용(감자 칩 등) 감자는 계절관세를 5월부터 11월까지 적용하나 7년 유예 후 8년간에 걸쳐 철폐하고, 12월부터 4월까지는 이행 초기연도에 즉시철폐함.
- 옥수수의 관세는 7년에 걸쳐 철폐되고, 이행 기간 중 ASG가 적용됨. 쿼터량은 팝콘용 옥수수의 경우 2,556톤에서 1만 1,246톤으로 증량되고, 기타는 9만 3,774톤에서 41만 2,603톤으로 증량됨. ASG 발동기준은 초기 18만 7,547톤, 최종연도 41만 2,603톤임.
- 보리, 맥주보리, 메밀, 녹두, 팥 등 기타 곡물의 관세철폐 기간은 대부분 15년임.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소량의 TRQ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고구마

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으로 다른 곡물류보다 이행기간이 짧음. 보리(겉보리, 쌀보리)의 TRQ는 2,500톤에서 시작하여 3,299톤으로 증량(15년차)되며, ASG는 15년간 적용됨. 맥아 및 맥주맥 TRQ는 9,000톤에서 시작하여 1만 1,875톤으로 증량(15년차)되고, ASG는 15년간 적용됨.

1.2.4. 채소 및 특작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중요한 양념채소의 관세철폐 기간은 15년이고 긴급관세(ASG)가 적용됨. ASG 적용 기간은 18년임. 인삼은 핵심 품목(7개. 수삼 그리고 백삼과 홍삼의 본삼, 미삼, 잡삼)의 관세철폐 기간은 18년이며, ASG는 20년간 적용됨. 인삼 가공품은 대부분 15년 관세 철폐에 ASG 18년이 적용됨. 인삼의 ASG 발동기준은 초기 62톤, 최종연도 103톤임.

2. 한·칠레 FTA

- 쌀, 사과, 배는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포도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11월부터 4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45%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함. 나머지 기간(5~10월)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WTO의 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유예기간을 확보하였음. 이러한 대상이 되는 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으로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 쿼터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조제분유, 과실혼합주스 등은 16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6년 거치 후 10년 동안 관세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음.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임. 기타 과일주스는 협정 발효 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그리고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은 협정 발효 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하였음.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혹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데 종유,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은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당류, 초콜릿, 면류 등은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하였음.

표 4-2. 우리나라의 한·칠레 FTA 농산물 양허 내용

양허유형	대상품목	품목수(%)
체 외	쌀, 사과(신선), 배(신선)	21(2%)
계절관세	포도(신선)	1
DDA협상 이후 논의	채 소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잎담배 등 곡 류 :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축산물 :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계란, 난황, 꿀, 치즈(신선, 커드 등), 밀크, 크림, 녹용 등 과실류 :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주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기 타 : 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잣,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등	373 (26%)
TRQ제공 DDA협상 이후 논의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 냉동, 조제저장), 유장(1,000톤), 자두(280톤), 만다린(100톤), 기타채소(100톤)	18 (1%)
16년철폐 (6년거치 10년균등철폐)	조제분유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딸기(조제저장), 가공품,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차조제품 등	12 (0.8%)
10년철폐	축산물 :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소 등), 요구르트, 종란, 조란, 닭고기(미절단, 냉장), 치즈(기타), 소시지 등	197 (13.8%)

양허유형	대상품목	품목수(%)
9년철폐	채소화훼류 :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등 과실류 :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 멜론, 채소주스, 과일주스 (오렌지·사과·복숭아) 등	
9년철폐	기타 과실주스	1
7년철폐	과실류 : 복숭아 통조림, 잼, 주스류(포도, 딸기), 복숭아 (조제저장) 축산물 : 칠면조고기(TRQ 600톤 제공) 곡 류 : 옥수수(종자), 완두·콩(냉동), 감자 등 채소류 : 기타채소(냉동), 균질채소 등 기 타 : 호두, 나무딸기, 수프 등	40(2.8%) TRQ제공 6개 품목 포함
5년철폐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열 제리, 꿀, 발굽, 사향 등 화훼류 : 튜울립·백합·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절화류(튜울립 등), 장미·난초·카네이션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주스 등 기 타 :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마가린, 코코아, 초콜릿,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당(맥아등), 조제식료품, 면류, 빵, 소주, 박류,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545 (38%)
즉시철폐	축산물 :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 곡 물 :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 씨, 종자 등 기 타 :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224 (15.6%)
합 계		1,432 (100%)

-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가 도입되었음. 두 나라 간에 합의한 세이프가드는 WTO 협정문상의 세이프가드보다 발동 요건이 용이하고 발동 기간과 사용의 회수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임.

표 4-3. WTO 세이프가드와 한·칠레 FTA 세이프가드 간의 비교

비교항목	WTO의 세이프가드	한·칠레 FTA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심각한 피해 등(시장점유율 등 구체적 기준 필요)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등 (일반원칙만 있음)
대상품목	모든 품목	농산물
적용기간	최대 4년(4년 연장 가)	제한 없음
잠정조치	명백한 증거 하에 200일간	긴급사유 존재 시 120일간

3. 한·페루 FTA

- 페루와의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양허 유형은 12개로 구분할 수 있음. 관세철폐 기간은 즉시에서 16년까지 다양하고, 관세철폐의 예외와 계절관세도 도입되었음.

표 4-4. 한·페루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

유형	내 용
A	즉시철폐
B	3년철폐
C	5년철폐
D	7년철폐
E	10년철폐
F	12년철폐
G	15년철폐
H	16년철폐
S-A	계절관세 - 5월1일~10월31일 : 현행유지 - 11월1일~4월30일 : 5년철폐
S-B	계절관세 - 5월1일~10월31일 : 현행유지 - 11월1일~4월30일 : 10년철폐
I	현행 유지
X	양허 제외

자료: WTO, 한·페루 FTA

-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16개(쌀 및 관련 품목)로 전체의 1% 수준임. 계절관세가 도입된 품목은 2개이고, 관세철폐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에 속하는 품목은 12년철폐 2개, 15년철폐 1개, 16년철폐 198개 등임.
 - 현행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은 89개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고려하면 관세감축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은 모두 105개로 볼 수 있음.
-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인 품목은 384개로 전체의 25.7%에 달함. 관세철폐가 5년 이내의 단기간에 완료되는 품목은 즉시철폐 377개, 5년철폐 352개를 포함하여 모두 776개(전체의 51.2%)임.
- 곡물류 가운데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에서 제외되었고, 대두(채유용과 박용 제외), 보리, 감자(종자용, 기타) 등은 현행 관세가 유지됨. 대부분의 주요 곡물은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에서 16년까지 장기로 설정되었음.
- 쇠고기, 유장, 치즈의 관세는 현재대로 유지되지만 나머지 축산물은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에서 16년까지로 설정되었음. 주요 축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은 천연꿀과 버터 16년, 닭고기와 돼지고기 10년 등임.
- 사과, 배, 감귤 등의 관세는 현재대로 유지되지만 오렌지와 포도의 경우 우리나라 수확기에 한해서 관세가 유지됨(계절관세). 복숭아, 단감, 파인애플, 키위, 은행 등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임. 바나나의 관세철폐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게 설정됨.
-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는 현행관세가 유지됨. 배추와 당근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임.

표 4-5. 한·페루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관세양허

	A	B	C	D	E	F	G	H	S-A	S-B	I	X	합계
01류	37	7	4	0	2	0	0	2	0	0	0	0	52
02류	2	0	10	0	53	0	0	19	0	0	10	0	94
04류	3	0	1	0	23	2	0	18	0	0	18	0	65
05류	37	0	5	0	6	0	0	4	0	0	0	0	52
06류	0	1	44	0	31	0	0	0	0	0	0	0	76
07류	3	1	17	6	77	0	0	19	0	0	11	0	134
08류	0	1	13	1	41	0	0	7	1	1	13	0	78
09류	17	0	12	0	4	0	0	4	0	0	2	0	39
10류	12	0	1	1	4	0	0	5	0	0	3	6	32
11류	4	2	4	0	2	0	0	28	0	0	3	4	47
12류	45	2	21	0	5	0	0	9	0	0	15	0	97
13류	6	2	8	0	1	0	0	4	0	0	3	0	24
14류	2	0	19	0	0	0	0	0	0	0	0	0	21
15류	39	0	30	0	18	0	0	8	0	0	0	0	95
16류	0	0	0	2	6	0	0	12	0	0	4	0	24
17류	8	0	11	0	7	0	0	7	0	0	0	0	33
18류	2	4	21	0	3	0	0	0	0	0	1	2	33
19류	9	14	11	0	8	0	0	4	0	0	2	4	52
20류	1	1	32	12	38	0	0	24	0	0	2	0	110
21류	1	0	44	5	14	0	0	3	0	0	2	0	69
22류	1	12	32	1	4	0	1	1	0	0	0	0	52
23류	35	0	0	0	4	0	0	6	0	0	0	0	45
24류	0	0	0	0	24	0	0	1	0	0	0	0	25
29류	0	0	2	0	0	0	0	0	0	0	0	0	2
33류	16	0	5	0	0	0	0	3	0	0	0	0	24
35류	12	0	3	0	9	0	0	10	0	0	0	0	34
38류	0	0	2	0	0	0	0	0	0	0	0	0	2
41류	28	0	0	0	0	0	0	0	0	0	0	0	28
43류	11	0	0	0	0	0	0	0	0	0	0	0	11
50류	16	0	0	0	0	0	0	0	0	0	0	0	16
51류	11	0	0	0	0	0	0	0	0	0	0	0	11
52류	10	0	0	0	0	0	0	0	0	0	0	0	10
53류	9	0	0	0	0	0	0	0	0	0	0	0	9
계	377	47	352	28	384	2	1	198	1	1	89	16	1496

4. 한·ASEAN FTA

4.1. 농산물 관세양허 현황

- 한·ASEAN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유형은 모두 9개로 분류할 수 있음. 관세철폐 유형에 따라 즉시철폐, 2008년까지 철폐, 2010년까지 철폐, 2015년까지 50% 이하로 감축, 2016년까지 1/2 감축, 2016년까지 1/5 감축, 2016년까지 5%포인트 이하로 감축 등이 있고, 그밖에 쿼터(TRQ)를 제공하지만 현행관세는 유지되는 방식과 양허제외 등임.
- 관세철폐 유형 가운데 즉시철폐에 속하는 품목이 가장 많음. 즉시철폐 품목은 전체의 36.7%인 533개이며, 즉시철폐 비중이 높은 품목군은 1류(산 동물), 5류(동물성 생산품), 6류(산 수목 및 꽃), 9류(커피, 차, 유지작물 및 인삼), 13류(식물성엑스), 14류(기타동식물성생산품), 15류(동식물성유지), 23류(조제사료), 24류(담배) 등임.
- 다음으로 많은 품목이 분포되어 있는 관세감축 유형은 관세를 2008년까지 철폐하는 것으로 전체의 22.8%인 331개 품목이 여기에 속함. 2016년까지 관세를 20%만 감축하는 것은 190개(전체의 13.1%), 5% 이하까지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하는 유형에는 152개 품목이 분포되어 있음.
- 2016년까지 관세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유형에는 HS 4류(낙농품)에 2개 품목, HS 8류(과실, 견과류)에 3개 품목이 속해 있음. 낙농품 2개 품목은 유장과 치즈로 이미 36%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관세 유지와 같은 효과를 나타냄. 과실 가운데 여기에 속하는 것은 신선 상태의 사과와 배로 이들 품목의 현행관세가 45%이기 때문에 현행관세 유지와 같음.

표 4-6. 한·ASEAN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

유형	내 용
A	즉시철폐
C	2008년까지 철폐
D	2010년까지 철폐
E	2016년까지 50% 이하
F	2016년까지 20% 감축
G	2016년까지 50% 감축
H	2016년까지 5% 이하
T	TRQ
Z	양허제외

자료: WTO, 한·ASEAN FTA.

표 4-7. 한·ASEAN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관세양허

	A	C	D	E	F	G	H	T	Z	계
01류	33	10	3	-	1	-	1	-	-	48
02류	23	17	3	-	28	-	7	-	16	94
04류	-	6	2	2	25	-	15	-	1	51
05류	36	11	2	-	3	-	1	-	-	53
06류	55	6	2	-	4	-	7	-	-	74
07류	31	17	31	-	15	1	18	7	11	131
08류	7	11	11	3	25	-	16	-	5	78
09류	5	24	2	-	1	-	-	-	4	36
10류	17	-	1	-	1	7	-	-	6	32
11류	5	1	2	-	8	16	8	1	4	45
12류	56	12	3	-	17	-	4	-	-	92
13류	3	13	3	-	4	-	2	-	-	25
14류	12	4	2	-	-	-	3	-	-	21
15류	32	36	9	-	2	1	11	-	-	91
16류	2	2	2	-	14	-	-	-	4	24
17류	11	13	-	-	3	-	6	-	-	33

	A	C	D	E	F	G	H	T	Z	계
18류	10	16	2	-	1	-	2	-	2	33
19류	16	16	1	-	4	-	8	-	5	50
20류	17	22	27	-	20	5	17	-	-	108
21류	13	30	6	-	5	1	9	-	-	64
22류	2	17	17	-	1	1	14	-	-	52
23류	36	3	-	-	4	-	1	-	-	44
24류	3	16	6	-	-	-	-	-	-	25
29류	-	-	-	-	-	-	2	-	-	2
33류	10	17	2	-	1	-	-	-	-	30
35류	12	9	-	-	3	4	-	-	-	28
38류	-	2	-	-	-	-	-	-	-	2
41류	28	-	-	-	-	-	-	-	-	28
43류	12	-	-	-	-	-	-	-	-	12
50류	16	-	-	-	-	-	-	-	-	16
51류	11	-	-	-	-	-	-	-	-	11
52류	10	-	-	-	-	-	-	-	-	10
53류	9	-	-	-	-	-	-	-	-	9
계	533	331	139	5	190	36	152	8	58	1,452

자료: WTO, 한·ASEAN FTA.

- 2016년까지 관세를 50% 감축해야 하는 유형은 36개 품목이며, 곡분, 전분(11류)에 16개 품목이 분포되어 있음. 그밖에 곡물(HS 10류)에 7품목, 과일·채소 조제품(HS 20류) 가운데 5개 품목이 여기에 속함.
- 2016년까지 관세를 20% 감축해야 하는 품목은 190개이며, 육류(HS 2류)와 낙농품(HS 4류)에 각각 28개, 25개가 분포되어 있음. 그밖에 채소(HS 7류), 과실(HS 8류), 채유용 종자·인삼(HS 12류), 채소·과실 조제품(HS 20류)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유지해야 하는 품목은 152개로 여기에 속하

는 품목은 주로 육류와 낙농품, 과일, 커피·차, 과일·채소 조제품, 음료·주류 등임. 2016년까지 관세가 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 감축 폭이 큰 경우가 있음. 예를 들면, 유장분말(HS 040410)의 현행 관세율은 49.5%인데 2016년까지 5%로 감축해야 함.

- 쿼터(TRQ)를 제공하지만 현행관세는 유지되는 품목은 8개로 강낭콩, 매니옥, 매니옥 전분에 속하는 것들임. 쿼터량은 강낭콩 2,000톤, 매니옥 25,000톤, 매니옥 전분 9,600톤 등임.
- 관세철폐 예외에 속하는 품목은 58개로 전체의 4.0%임. 여기에 속하는 품목은 육류(16품목), 채소(11품목), 과일(5품목), 곡물(6품목), 곡분 및 전분(4품목), 육류조제품(4품목), 코코아·초콜릿(2품목), 곡물·곡분의 조제품 및 빵류(5품목) 등임.

4.2.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 한·ASEAN FTA에서 우리나라가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은 주로 농산물 생산의 원료 성격이 강한 품목들임. 예를 들면, 종우, 종도, 종계, 화훼 생산을 위한 구근이나 괴경, 채소 종자, 종자용 옥수수 등임.
- 관세의 단기철폐에 해당하는 ‘2008년까지 관세철폐’ 유형에 속하는 커피, 면양, 후추, 계피, 코코아, 마가린, 빵류 등은 우리나라 농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들임.
-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면실유, 로열젤리, 배추, 상추,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 완두, 냉동감자, 당근, 오이 등이 있으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거의 없음.

- 2016년까지 관세를 5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치즈, 사과, 배 등은 이미 현행 관세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감축의 의미가 없음. 2016년까지 관세를 50% 감축해야 하는 품목은 주스류와 보리 등 쌀을 제외한 곡물 가공품(곡분, 곡물 플레이크, 곡물 분쇄물 등)이 많음.
- 2016년까지 관세를 5% 이하로 유지(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개방 폭은 상당히 큰 것에 속함)해야 하는 품목은 육류 가운데 소와 닭의 설육, 낙농품 가운데 유장 등이 대표적임. 그밖에 축산물 가운데 조란(계란 제외), 화훼류 가운데 일부 절화(백합, 안개초 등), 채소류 가운데 아스파라거스, 양송이버섯, 호박, 냉동 양파, 토마토 등이 있음. 이들 품목의 개방 폭은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세감축률이 낮은 ‘2016년까지 20% 감축’에 속하는 품목은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냉장), 쇠고기와 돼지고기 설육, 크림, 분유, 연유, 요구르트, 버터 등이 있음. 화훼류는 장미, 양란, 국화 등 중요한 절화류가 이 유형에 포함되고, 과실류 가운데에서는 호도, 밤, 단감,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복숭아, 대추, 잣 등이 여기에 속함. 그밖에 고구마, 김치, 참깨 등도 이러한 관세철폐 유형에 속함.
- TRQ는 제공되지만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8개 가운데 매니옥 관련 제품(매니옥 전분 포함)이 6개이고 나머지는 강낭콩임.
-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육류 가운데 쇠고기(냉동),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등), 닭고기, 오리고기(일부) 등이 있고, 채소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양념채소류가 있음. 과실 가운데 제외된 것은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감귤, 만다린 등임. 그러나 사과와 배의 경우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포도를 제외하고는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과일은 없는 상태임. 곡물 가운데 시장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쌀 및 쌀 관련 조제품 등 16개 품목임.

표4-8. 한·ASEAN FTA에서 한국의 주요 농산물 시장개방 내용

양허유형	품 목
즉시철폐	종우, 종돈, 종계, 닭, 칠면조, 오리, 틀립, 백합, 장미(접목여부불문), 난초, 카네이션, 쪽파, 버섯종균, 비계,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씨,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커피(볶지 않은 것), 말, 치커리와 치커리뿌리, 채소주스,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면류(라면 등), 효모(누룩 등), 소주, 박류, 칠면조고기, 옥수수(종자용), 양고기, 순무 등
2008년까지 철폐	코프라, 콜라베이스, 커피(볶음), 면양, 송이버섯(냉동), 후추, 계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마가린, 코코아, 초콜릿, 빵, 겨자분, 단백질(카세인 등), 과실나무, 나무딸기, 포도즙 등
2010년까지 철폐	식물성유지(면실유 등), 로열젤리, 식물잎(은행잎이외/신선), 배추, 상추, 무, 죽순, 고사리(신선·냉장), 송이버섯, 포도주, 위스키(버번위스키 등), 복숭아통조림, 복숭아(조제저장), 완두, 감자(냉동), 수프, 당근(신선·냉장), 오이, 혼합주스, 수박 등
2016년까지 50% 이하	치즈(신선), 사과(신선), 배(신선) 등
2016년까지 1/2 감축	주스류(오렌지주스 등), 보리 등
2016년까지 20% 감축	쇠고기(냉장), 쇠고기와 돼지고기 설육, 크림, 분유, 연유, 요구르트, 버터, 장미, 양란, 국화(절화), 고구마, 호도, 밤, 김치, 단감,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복숭아, 대추, 잣, 참깨, 면류(국수 등), 잼(기타), 소시지, 등
2016년까지 5% 이하	식용설육(소 등), 두부, 위스키(스카치위스키 등), 조란,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레몬, 건포도, 복숭아, 딸기, 키위, 살구(신선), 멜론, 과일주스(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유장, 자두, 냉동 양파 등, 아스파라거스, 양송이버섯 등
TRQ	강낭콩, 타피오카 등
양허제외	쌀, 쇠고기(냉동), 돼지고기, 닭고기, 만다린, 고추, 마늘, 감귤, 녹차, 바나나, 양파, 파인애플, 오렌지 등

자료: WTO, 한·ASEAN FTA.

표 4-9. 한·ASEAN FTA에서 한국의 TRQ 제공 내역

HS	품명	대아세안 할당량(톤)	할당수량 내 세율	할당수량 외 세율
0713331000	흰 완두콩을 포함한 강낭콩(파세리스블라리스)	2,000	0%	최혜국대우 관세율
0713339000				
0714101000	매니옥(카사바)	25,000	20%	최혜국대우 관세율
0714101000				
0714102090				
0714103000				
0714104000				
1108140000	매니옥(카사바)전분	9,600	9%	최혜국대우 관세율

자료: WTO, 한·ASEAN FTA.

제 5 장

TPP 가입의 영향과 시사점

1.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 전망

- TPP의 기본축인 목표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개방의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관세철폐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회원국들은 대부분 이 원칙을 지키고 있음.
 - 따라서 기존 4개 회원국 간에 맺어진 협정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시장개방 예외와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 품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TPP 초기 회원국들의 관세양허 내용을 분석한 결과 브루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원국의 경우 시장개방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브루나이는 80개의 시장개방 예외 농산물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모두 술, 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브루나이 사회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예로 볼 수 있음.
 - 뉴질랜드는 농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의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은 비농산물에 비해

양허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임. 기존 무관세 품목과 즉시철폐 품목을 합하면 농산물의 99.2%가 TPP 발효와 동시에 완전히 개방됨. 농산물 가운데 8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음.

- 칠레는 TPP 협상에서 농산물 가운데 낙농품, 설탕, 밀, 식용유 등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하여 10년 이내의 관세철폐라는 TPP의 목표보다 장기간의 관세철폐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개방의 예외 품목은 없음. 12년철폐 유형으로 양허된 품목은 세이프가드가 적용됨.
 - 싱가포르의 기존 무관세 품목이 대부분으로 TPP에서의 관세철폐는 의미가 없음. 브루나이의 경우도 농산물 가운데 기존 무관세 품목의 비중이 91.4%에 달하기 때문에 술 및 담배와 관련된 시장개방 예외 품목 80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임.
- 그러나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페루,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의 TPP 가입 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음.
- 초기 가입국인 P4는 농산물이 시장개방에 있어서 민감분야로 작용하지 않을 만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이었으나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5개국의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은 P4 국가보다 높은 상황임. 특히 협정 참여를 검토 중인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및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 가운데 미국, 페루, 칠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는 이미 FTA를 체결한 바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부담은 우리나라가 P4 국가 및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와 맺은 FTA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4개 TPP 회원국 및 가입 협상 중인 5개국 가운데 FTA를 체결(또

는 협상 타결)하지 않은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뿐임.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FTA 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것에 따른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추가적인 부담은 실제 FTA 체결 국가와의 시장개방 수준과 TPP 가입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개방 수준을 비교, 분석해야 판단이 가능함.

- 기존의 TPP 협정 골격이 후발 가입 희망국들의 가입협상에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극히 제한된 농산물 이외에는 시장개방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관세철폐 기간도 10년을 초과하는 품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와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따른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1.1. 곡물

-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곡물류의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된다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TPP 회원국은 물론 기존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TPP 회원국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존재함.
- 곡물류 가운데 감자(식용)와 대두(식용)를 제외한 다른 주요 곡물의 시장개방 수준은 한·미 FTA가 가장 높음. 감자와 대두의 시장개방 수준은 한·ASEAN FTA가 한·미 FTA보다 높음. 따라서 미국에 대한 감자와 대두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ASEAN과의 FTA에서 대부분의 곡물류에 대한 관세감축 수준이 20% 정도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곡물류에 대한 관세는 수백%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칠레와 페루에 대한 곡물류의 시장개방 부담은 옥수수, 감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채유용 및 박용 대두에 대한 시장개방 부담은 칠레와 페루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음(미국과 ASEAN에 대해서는 기존 FTA에서 이미 개방 수준을 높게 설정).

표 5-1. TPP 참여 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곡물)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감자	현행 유지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 제외	DDA 이후	현행 유지/ 10년 ¹⁾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고구마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 제외	DDA 이후	16년	ASEAN, 칠레, 페루, 싱가포르
녹두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 제외	DDA 이후	10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메밀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 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쌀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보리	15년	2016년까지 50% 감축	양허 제외	DDA 이후	현행 유지/ 16년 ²⁾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대두 (채유/ 박용)	즉시	2010년	10년	DDA 이후	16년	칠레, 페루
대두 (기타)	현행 유지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 제외	DDA 이후	현행 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주: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 시 쌀은 양허 제외 나머지 품목은 10년철폐로 가정함.

주: 1) 페루 양허안에서 감자(중자용, 기타)는 양허 제외이고 나머지 세번은 10년철폐임.

2) 페루 양허안에서 보리(맥주맥, 겉보리, 쌀보리, 맥아)는 현행관세 유지이고 나머지 주요 세번은 16년철폐임.

1.2. 축산물

- 미국에 대하여는 냉장 닭고기, 쇠고기, 천연꿀, 분유, 치즈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돼지고기는 한·미 FTA에서 관세철폐 기간이 10년 이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없을 수 있음.
- 한·ASEAN FTA에서 우리나라는 축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낮기 때문에 TPP 가입시 ASEAN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축산물 가운데 냉장 닭고기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10년간 50%의 관세감축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남아있음. 유당의 경우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없음.
 - 쇠고기, 돼지고기, 천연꿀, 유당을 제외한 주요 낙농품 등은 한·ASEAN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 또는 관세감축 20% 정도로 양허된 것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남아있음.
- 칠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할 축산물은 냉동 닭고기, 쇠고기, 요구르트를 제외한 주요 낙농품 등임. 냉장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한·칠레 FTA에서 이미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없음.
- 페루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할 축산물은 쇠고기, 버터, 치즈, 분유 등의 낙농품, 천연꿀 등임.

표 5-2. TPP 참여 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축산물)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닭고기 (냉장)	12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닭고기 (부위별/냉장)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닭고기(부위 별/냉동)	12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10년	ASEAN, 싱가포르, 칠레
돼지고기 (냉장)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10년/ 16년 ¹⁾	ASEAN, 싱가포르, 페루
돼지고기 (냉동)	2016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10년/ 16년 ²⁾	ASEAN, 싱가포르, 페루
쇠고기 (신선/냉장)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페루, ASEAN, 싱가포르,
쇠고기 (냉동)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페루, ASEAN, 싱가포르
낙농품 (밀크와 크림)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낙농품 (분유)	현행 유지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낙농품 (요구르트)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낙농품 (버터)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낙농품 (유장)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낙농품 (치즈)	15년	2016년까지 5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양허제외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낙농품 (유당)	5년/ 10년	2008년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싱가포르, 칠레, 페루
천연꿀	현행 유지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주: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 시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12년철폐로 가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10년철폐로 가정함.

주: 1) 페루 양허안에서 돼지고기(냉장/삼겹살, 기타)는 16년철폐이고 나머지 세번은 10년 철폐임.

2) 페루 양허안에서 돼지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삼겹살)는 16년철폐이고 나머지 세번은 10년철폐임.

1.3. 과일

- 과일은 한·미 FTA 협상에서 10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큰 품목에 속함. 한·미 FTA에서 10년까지의 관세철폐 기간이 설정된 것은 바나나, 단감, 복숭아, 파인애플 정도에 불과함. 사과, 배, 포도, 감귤 및 오렌지, 참다래 등 주요 과일은 대부분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함.
-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등 ASEAN 국가로부터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한·ASEAN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로 하였고, 사과, 배 등 중요한 온대성 과일은 관세철폐 대신 관세의 부분감축(20%, 50% 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ASEAN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됨.
- 칠레와의 FTA에서 사과와 배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열대성 과일은 DDA 협상 이후에 시장개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추가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됨.
- 페루와의 FTA에서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과일은 감귤, 배, 사과 등이고, 포도와 오렌지도 수확기에는 현행관세가 유지됨. 따라서 이들 품목은 TPP 가입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함.

표 5-3. TPP 참여 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과일)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감귤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단감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감(곶감)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바나나	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5년	ASEAN, 싱가포르, 칠레
배	20년 (동양배)	2016년까지 50% 이하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복숭아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사과	20년 (후지)	2016년까지 50% 이하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오렌지	현행유지+ 계절관세	2016년까지 50% 이하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계절관세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파인애플 (신선)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10년	ASEAN, 싱가포르, 칠레
포도	17년+ 계절관세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계절관세	현행유지+ 계절관세	미국, 페루, ASEAN, 싱가포르
참다래	15년	2016년까지 5% 이하	10년	10년	10년	미국, ASEAN
은행	10년	2008년	양허제외	DDA 이후	10년	싱가포르, 칠레
잣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DDA 이후 ¹⁾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주: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시 감귤, 배, 복숭아, 사과, 포도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12년 철폐로 가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10년 철폐로 가정함.

1) 칠레 양허안에서 잣(냉동)은 10년철폐이고 나머지 세번은 DDA 이후 재논의하기로 함.

1.4. 채소 및 특작

- 한·미 FTA 협상에서 채소 및 과채류의 시장개방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입 증가 가능성이 낮은 당근, 신선 딸기, 배추, 호박 등이 관세철폐 10년 이내에 속하는 품목이고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관세철폐 기간이 10년 이상임. 따라서 TPP 가입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채소 및 과채류, 인삼 등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존재함.
- 배추, 오이,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는 ASEAN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한·ASEAN FTA에서 관세양허 제외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칠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도 ASEAN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오이, 호박, 배추, 당근 등 일부 채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채소 및 과채류가 한·칠레 FTA 협상에서 DDA 이후 논의 품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 페루와의 FTA에서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현행관세 유지로 양허된 품목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함. 그밖에도 16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땅콩, 생강, 참깨, 표고버섯 등 채소 또는 특작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도 예상됨.

표 5-4. TPP 참여 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채소/특작)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고추	15년	양허 제외	양허 제외/ 10년 ¹⁾	즉시/DDA 이후 ²⁾	현행유지/ 10년 ¹⁰⁾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녹차	15년	양허 제외	양허 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당근	5년	2010년/ 즉시 ³⁾	양허 제외/ 10년 ⁴⁾	10년	10년	싱가포르
대추	12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 제외	10년/DDA 이후 ⁵⁾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딸기 (신선)	9년	2016년까지 5% 이하	10년 철폐	DDA 이후	10년	ASEAN, 칠레
땅콩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 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마늘	15년	양허 제외	양허 제외/ 10년 ⁶⁾	DDA 이후	현행유지/ 10년 ¹¹⁾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밤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 제외	10년/DDA 이후 ⁷⁾	현행유지/ 10년/ 16년 ¹²⁾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배추 (신선)	5년	2010년	10년	5년	10년	-
생강	15년	2016년까지 50% 감축	양허 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양파 (신선/냉장, 건조)	15년	양허 제외	양허 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양파	12년	2016년까지	10년	10년	10년	ASEAN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냉동)		5% 이하				
오이 (신선)	즉시 철폐	2010년	양허제외	10년	10년	싱가포르
인삼	18년/ 15년 ⁸⁾	2016년까지 5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16년 ¹³⁾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참깨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표고 버섯	15년	2016년까지 5% 이하	양허제외	10년/DDA 이후 ⁹⁾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호박 (신선)	즉시 철폐	2016년까지 5% 이하	10년	10년	10년	ASEAN

주: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 시 고추, 마늘, 양파, 인삼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12년 철폐로 가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10년철폐로 가정함.

- 1) 싱가포르 양허안에서 고추(냉동)은 10년철폐이고 나머지 세번은 양허제외임.
- 2) 칠레 양허안에서 고추류(벨타입/냉장), 고추(냉동)은 즉시철폐이고 나머지 세번은 DDA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함.
- 3) ASEAN 양허안에서 당근(신선/냉장)은 10년철폐이고 당근(냉동)은 즉시철폐임.
- 4) 싱가포르 양허안에서 당근(신선/냉장)은 양허제외이고 당근(냉동)은 10년철폐임.
- 5) 칠레 양허안에서 대추(냉동)은 10년철폐이고 대추(신선), 대추(건조)는 DDA 이후 재논의하기로 함.
- 6) 싱가포르 양허안에서 마늘(냉동)은 10년철폐이고 나머지 세번은 양허제외임.
- 7) 칠레 양허안에서 밤(냉동)은 10년철폐이고 나머지 세번은 DDA 이후 재논의하기로 함.
- 8) 미국 양허안에서 인삼(백삼/미삼)은 18년철폐이고 인삼가공품(인삼분말, 엑스, 엑스분 등)은 15년철폐임.
- 9) 칠레 양허안에서 표고(건조)은 10년철폐이고 표고(신선/냉장)은 DDA 이후 재논의하기로 함.
- 10) 페루 양허안에서 고추(냉동)은 10년철폐이고 나머지 세번은 현행유지임.
- 11) 페루 양허안에서 마늘(냉동)은 10년철폐이고 나머지 세번은 현행유지임.
- 12) 페루 양허안에서 밤(탈각/미탈각)은 현행유지이고 밤(냉동)은 10년철폐, 밤(조제저장 처리)는 16년철폐임.
- 13) 페루 양허안에서 인삼(백삼/미삼)은 현행유지이고 인삼가공품(인삼분말, 엑스, 엑스분 등)은 16년철폐임.

2. 시사점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또는 경제통합 움직임은 APEC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임. APEC의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ASEAN+3 또는 ASEAN+6 등 ASEAN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또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APEC과 ASEAN+3(또는 6)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의 불확실성 속에서 TPP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준 높은 시장개방을 통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일본이 TPP에 가입하여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으로 확대될 경우 주변국들의 TPP 가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이 TPP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가입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음.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TPP 회원국 또는 후발 협상국들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임. 따라서 TPP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존의 FTA에서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분야의 개방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기존 FTA에서 우리나라의 비농산물 분야 시장개방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세율도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이익은 제한적임.
- 반면 농산물 분야는 시장개방 수준이 비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관세율도 높아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기존 FTA 협상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은 한·미 FTA가 가장 높

은 것으로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의 시장개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또는 목표를 받아들이면서 TPP에 가입할 경우 그에 따른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농산물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후발 5개국의 TPP 가입 협상과 일본의 TPP 가입 여부를 들 수 있음.
 - 후발 5개국의 가입 협상에서 시장개방의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도 영향을 받게 됨.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TPP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일본이 가입할 경우 TPP 회원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일본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됨.
 - 따라서 일본의 TPP 가입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촉발하는 측면이 있음.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에서 민감분야는 농산물이 될 것이며,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보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의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 조건 및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2011년 6월까지 TPP 참여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동북부 대지진 등 국내 여건 변화로 연기된 상태임. TPP 참여에 대한 초기의 계획은 크게 수정되거나 TPP 참여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음.
- 우리나라는 TPP 참여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후발 5개국의 TPP 가입 협상 결과와 일본의 결정을 지켜본 후 농업 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비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긍정적 영향 등을 분석한 후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 문헌

- 정인교. 2004. “한-싱가포르 FTA 의미와 과제.” 문화일보.
- 임송수 외. 2011. “TPP 논의 경과 및 관련연구 동향.”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외교통상부. 2005.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2007. “한·ASEAN FTA 주요 내용.”
- 최세균 외. 2006.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원기. 2011. 01. 20. “이젠 TPP협상 대비할 때.” 서울경제.
- Clark, P. 2010. “Trade Spotlight: Canada Frozen Out.” Financial Post, Nov 8, 2010.
<http://opinion.financialpost.com/2010/11/08/canada-frozen-out/>
- Donohue, T. 2010. “Priorities for US-Korea Relations and the G-20: The Business Perspective.” US Chamber of Commerce, Nov 10, 2010.
<http://www.uschamber.com/press/speeches/2010/priorities-us-korea-relations-and-g-20-business-perspective>
- Fergusson, I. and B. Baughn. 2010.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0502, Washington, D.C. <http://www.crs.gov>
- Inside US Trade. 2011a. “USTR May Not Table TPP Texts In All ‘May 10’ Issues By Singapore Round.” February 25, 2011.
- . 2011b. “Leaked New Zealand TPP IPR Text Largely Adheres To TRIPS Agreement.” February 25, 2011.
- . 2011c. “US TPP Partial IPR Text Goes Beyond Old FTA Provisions on Copyrights.” February 18, 2011.
- . 2011d. “Johanns: Japan Beef Progress Should be Prerequisite for TPP Inclusion.” February 25, 2011.
- Kirk, R. 2009. Letter to the Speak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Dec 14, 2009.
http://www.ustr.gov/webfm_send/1559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FAT]. 2009. The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ew Zealand Government, March 2009. <http://www.mfat.govt.nz>
- Shintaro Hamanaka, 2010, “ADB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sian Development Bank.

- The Australia-US Free Trade Agreement: An Assessment, Philippa Dee, 2005.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2011. URTR News. February 18, 2011.
<http://www.ustr.gov>
- White House. 2011. Press Release, “Remarks by the President in State of Union Address.”
 January 25, 2011.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1/25/remarks-president-barack-obama-state-union-address>
- 石田信隆. 2010. “TPPと戦略的経済連携.” 農林金融 2010. 12: 23-41
- 毎日新聞. 2011a. “開國フォーラム：TPP 国民浸透に壁.” 2011.2.16.,
<http://mainichi.jp/life/money/news/20110227k0000m020059000c.html>
- 毎日新聞. 2011b. “経産省：農林漁業向けファンド提案 TPP 控え支援策.” 2011.2.23.
<http://mainichi.jp/life/money/news/20110223k0000m020115000c.html>
- 岡田 哲郎. 2011. “世界経済見通し”. Business & Economic Review. 2011. 1.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ber/pdf/5283.pdf>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http://global.korcham.net>>.
-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 주 부르나이 대한민국 대사관 <<http://brn.mofat.go.kr>>.
- Bilaterals.org, <<http://www.bilaterals.org>>.
- Japan Customs <<http://www.customs.go.jp/english>>.
- KITA FTA포탈 <<http://fta.kita.net>>.
- KOTRA <<http://www.globalwindow.org>>.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Digest <<http://tppdigest.org>>.
- Trade Map, <<http://www.trademap.org>>.
- USTR <<http://www.ustr.gov>>.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076000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잇꽃씨)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101000	호프(신선, 건조)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1020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119030	호밀 맥각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129100	사탕무와 사탕수수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1299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180010	생선기름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012010	조제식료품(유지방 25% 이상 함유)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01209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042000	조제식료품(곡물류, 굵지 않은 시리얼)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29011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29012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29019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2909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06905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085010	살구(기타조제저장처리)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08502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022000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겨, 쌀, 밀, 기타 곡물)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0230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0240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0250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032010	사탕수수찌꺼기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19000	밀과 메슬린(기타)	31.50	31.50	31.50	28.90	26.30	23.70	21.00	15.80	10.50	5.30	0.00	0.00	0.00	
110100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31.50	31.50	31.50	28.90	26.30	23.70	21.00	15.80	10.50	5.30	0.00	0.00	0.00	
15071000	대두유와 그 분획물(조유 및 기타)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7901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7909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81000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89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91000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099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000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11000	팜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110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12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11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19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2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2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2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1100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15131900	또는 마바수유와 그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2100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1100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1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9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9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2100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2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5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901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909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79090	마가린 및 15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기타)	6.00	5.40	4.80	4.20	3.60	3.00	2.40	1.80	1.20	0.60	0.00	0.00	0.00
17011100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120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10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1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2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701999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22000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락타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3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4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5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1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2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9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901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909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31000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17039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4021000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1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3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4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5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6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7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1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3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4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5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6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7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40291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1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9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9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39000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되거나 산성화된 밀크 와 크림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41000	유장과 변성유장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1000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 에 한한다), 테어리 스프레드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2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9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1030	치즈와 커드(모짜렐라 치즈, 체다치즈, 고다 치즈, 에담치즈)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10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3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자료: WTO, 칠레 양허안(TPP)

정책연구보고 P14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9. .

발 행 2011. 9. .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dongyt@chol.com

ISBN: 978-89-6013-258-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